과 업 보 고 서

용역명 :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

제1장 서론 ····· 6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
1.2 선행연구 ····· 9
1.3 연구내용 ····· 11
1.4 연구 방법 ····· 13

제2장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 ····· 16
2.1 남북협력기금 개요 ····· 16
2.1.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배경 ····· 16
2.1.2 남북협력기금 지원 분야 ····· 17
2.2 남북협력기금의 북한 인권 지원 현황 ····· 19
2.3 남북협력기금의 인권증진 사업 활용 가능성 검토 ····· 22

제3장 북한인권법 개정 및 북한인권기금법(가칭) 제정을 통한 재원조달 ····· 26
3.1 북한인권법 제·개정 경과와 내용 분석 ····· 26
3.1.1 북한인권법 제정 및 개정 경과 ····· 26
가.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 ····· 26
나. 북한인권법 제정 경과 ····· 28
다. 북한인권법 개정 경과 ····· 30
3.1.2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분석 ····· 31
가. 법령 구성 ····· 31
나. 법령 내용 ····· 32
다. 의미와 쟁점 ····· 34
3.2 북한인권 증진 활동 분석 ····· 36
3.2.1 북한인권 증진 활동 조사 방법 ····· 37
가. 이슈 분석 ····· 39
나. 행위자 분석 ····· 45
다. 재원 특징: 통일부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 48
3.2.2 효과적인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과제 ····· 50
3.3 북한인권기금(가칭)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제안 ····· 53

3.3.1 북한인권기금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53
3.3.2 북한인권기금 도입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제안 ····· 54
가. 북한인권법 개정의 쟁점 ····· 54
나. 북한인권법 개정안 제안 ····· 56
3.3.3 북한인권기금 도입을 위한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안 제안 ····· 57
가.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의 쟁점 ····· 57
나.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안 제안 ····· 60

제4장 별도 재단 신설을 통한 재원조달 ····· 64

4.1 미국 NED 기반 인권증진 활동 현황 ····· 64
4.1.1 NED의 개요 ····· 64
4.1.2 NED의 근거법 ····· 65
4.1.3 NED의 재원 ····· 68
4.1.4 NED의 핵심 제휴기관(core grantee) ····· 70
4.1.5 NED의 운영 ····· 70
4.1.6 NED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 71
4.1.7 NED의 프로젝트 평가 ····· 73
4.1.8 NED의 민주주의 증진 활동 사례(중국, 북한) ····· 73
가. NED의 중국 사업 ····· 73
나. NED의 북한 사업 ····· 78
4.2 NED 기반 인권 증진 활동의 특징과 한계 ····· 80
4.2.1 NED 활동의 특징 ····· 80
4.2.2 NED 활동의 한계 ····· 82
4.3 (가칭)K-NED 설립을 위한 검토 ····· 83
4.3.1 북한인권재단과 별도의 재단 설립 검토 ····· 83
4.3.2 (가칭)K-NED 설립의 SWOT 분석 ····· 85
4.3.3 (가칭)K-NED 설립 방안 ····· 88

제5장 신탁기금 신설을 통한 재원조달 ····· 89

5.1 신탁기금(Trust Fund, TF) 기반 인권증진 활동 현황 ····· 89
5.1.1 UN 인권 신탁기금의 개요 ····· 89
5.1.2 캄보디아 인권 교육 프로그램 UN 신탁기금의 특징과 한계 ····· 91
5.1.3 인권 분야 기술협력 UN 자발적 기금의 특징과 한계 ····· 93
5.2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설립을 위한 검토 및 함의 ····· 94

5.2.1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설립을 위한 설립 절차 ····· 94
가. 유엔신탁기금 설립 절차 ····· 94
나. ITF(International Trust Fund) 설립 절차 ····· 97
다.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설립 사례 ····· 98
5.2.2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설립의 함의(SWOT 분석) ····· 99
5.2.3 신탁기금 설립 방안 ····· 101

제6장 혁신적 재원마련의 가능성 모색 ····· 102
6.1 국내 북한 인권 기금 재원확보 방안 ····· 102
6.1.1 중앙정부 기금활용 현황 분석 ····· 102
6.1.2 국내 통일 관련 관람시설 입장료 활용(안) ····· 110
6.1.3 기업의 ESG 활동 활용 ····· 112
6.1.4 기존의 국내 사회적 자본 메커니즘 활용(안) ····· 115
6.2 해외 재원마련 사례분석 ····· 117
가. 세금 또는 의무적 부담금 형태 ····· 117
나. 자발적 기여 ····· 124
다. 채권 ····· 126
라. 기금/펀드 ····· 135

7. 결론 ····· 139

참고문헌 ····· 140

- 표 목차-

<표 1-1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7
<표 1-2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구분> ·····11
<표 1-3 북한인권 전문가 자문검토 실시 현황> ·····14
<표 1-4 법률 전문가 자문검토 실시 현황> ·····15
<표 2-1 남북협력기금 주요 지원 항목> ·····18
<표 2-2 남북협력기금 인권증진 사업 지원 현황('91~'23)> ·····20
<표 3-1 「북한인권법」의 구성> ·····31
<표 3-2 과업지시서 상 인권증진 활동의 종류와 범위> ·····37
<표 4-1 NED 근거 법령> ·····64
<표 4-2 NED 활동 명세서(Statement of Activities)> ·····68
<표 4-3 2021년 NED의 북한 관련 지원금> ·····78
<표 5-1 UN 인권사무소가 관리하는 신탁기금> ·····89
<표 5-2 UN 인권사무소가 관리하는 특별기금> ·····90
<표 6-1 정부 기금 리스트> ·····103
<표 6-2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107
<표 6-3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108
<표 6-4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방식> ·····111
<표 6-5 국내 통일 관련 관람시설 현황> ·····112
<표 6-6 국내 20대 기업 40개 사회공헌재단 목록> ·····114
<표 6-7 사랑의 열매 배분 실적 현황> ·····116
<표 6-8 카카오 메이커스-사랑의열매 캠페인 현황> ·····117
<표 6-9 각 국가별 항공권 연대 기금> ·····118
<표 6-10 국가별 금융거래세 부과 현황> ·····119
<표 6-11 EU 각국의 탄소세 도입 추이> ·····120
<표 6-12 EU 국가들의 담배가격 구조> ·····121
<표 6-13 국가별 관광세 요약> ·····122
<표 6-14 세계은행 녹색채권 자금 분약별 약정 및 배분 현황> ·····128
<표 6-15 영국 정부의 적격 녹색 프로젝트> ·····129
<표 6-16 독일 연방정부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사례> ·····130
<표 6-17 인도네시아의 녹색채권 및 그린 수쿠크 관리체계> ·····131

- 그림 목차-

<그림 2-1 남북협력기금 법령체계>17
<그림 3-1 통일백서 북한 인권 증진 이슈별 이벤트 분석> ·····39
<그림 3-2 국내 지면 기사 북한 인권 증진 이슈별 이벤트 분석> ·····40
<그림 3-3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활동 추진 거버넌스> ·····58

[약어표]

AAFLI: Asian-American Free Labor Institute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CBT: Climate Budget Tagging
CIO: 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oin
CIPE: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OI: Commission of Inquiry
DFID: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MZ: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EnDev: Energising Development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U: European Union
GCF: Green Climate Fund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HRNK: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DLI: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Institute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FFI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TF: International Trust Fund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OECD CR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reditor Reporting System
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E: Opera Exhibition/ Education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별 인권 상황을 평가해온 프리덤하우스는 1972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을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보고하였으며, 2024년에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였음.[1)]

○ 보고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잘못 운영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함.

○ 북한 주민들은 표현 및 신앙의 자유 측면 및 법치주의 관련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됨.

□ 이러한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문제로써 이미 국제사회는 유엔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왔음.

○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023년까지 21년 연속 채택된 바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역시 국제사회가 규정한 포괄적 인권 개념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측면의 보호에만 집중되는 가운데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은 극히 미미하였음.

○ 국제사회는 1966년 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함.

○ 국제인권규약은 A-B 두 개의 규약과 각각의 선택의정서로 규정되어

1)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country/north-korea/freedom-world/2024

있으며, A 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을 B 규약은 정치·시민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2)]

<표 1-1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분류		개별 인권의 내용
A 규약	경제적 권리	1.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롭고,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하는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2. 노동권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4. 노동조합을 형성 및 파업할 권리
	사회적 권리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아동의 권리 3.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문화적 권리	1.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 2.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3. 소수자의 권리
B 규약	시민적 권리	1.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2. 재소자의 권리 및 고문 금지,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4.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의사소통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지
	정치적 권리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3. 정치에 참여할 권리

출처: 이준일 외(2015), p.4.

○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를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두 열악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2) 이준일 외, "행정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2015년 4월 7일), p.4. 2015

- 다만, 정치·시민적 권리에 포함되는 주요 인권 문제(종교·사상·이동의 자유)의 경우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국제사회 또한 원조 및 옹호 활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이들 사업은 대부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하물며 이들 사업 역시 국제정세 혹은 남북관계와 연계된 정치적 부침에 영향을 받아 꾸준히 실행되지 못하고 특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등 한계가 있음.

- 예컨대 OECD DAC 공여국의 대북지원은 2002년 2억 5천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였지만, 2020년에는 1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북한이 비교적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시기와 그렇지 못했던 시기 간 격차가 매우 큼.[3)]

□ 이러한 가운데,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해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채택한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2016년에서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적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미미한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임.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은 대북지원을 통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함께 정치·시민적 권리가 동시에 증진되어야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온전한 개념의 인권 상황 개선이 실현되는바,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개선을 위한 활동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해

3)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남북관계의 정치적 부침과 상관없이 정부와 민간이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기존 남북협력기금의 낮은 집행률 지속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의 측면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6년 북한인권법이 재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지연, 입법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의 미미한 성과 등을 검토하여, 인권 증진의 실효적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정세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통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북한주민들의 정치·시민적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1.2 선행연구

□ 북한인권 관련 연구는 현황 평가와 요인 분석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 정영철 외. 2014.「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현대정치연구』. 7권 1호.
- Gregory Ulferts and Terry L. Howard. 2017.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and Their Consequences." *North Korean Review*. Vol. 13. No. 2.
- Jin Woong Kang. 2013. "Human Rights and Refugee Status of the North Korean Diaspora." *North Korean Review*. Vol. 9. No. 2.
- Joel R. Charny. 2004. "North Koreans in China: A Human Rights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등 다수

□ 그 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한 논문들도 다수 확인됨.

- Kyungyon Moon. 2014.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uman Rights Norms, and North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Vol. 46. No. 1.
- 이무철. 2010.「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통일문제연구』. 22권 1호.
- Andrew Yeo and Danielle Chubb. 2018.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and Netwo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ngin Kim. 2010. "A Study of the Roles of NGOs for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Vol. 8. No. 1 등 다수

□ 통일준비, 남북협력사업 활성화 혹은 북한의 경제난 완화 등, 북한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증진 및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 목적의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논의는 아래와 같이 다수 확인되나, 현재까지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으로 구체화하여,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법령 제정 혹은 개정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장형수. 2008.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한국통일정책연구논총. 17권 1호.
- 윤덕룡. 2011. 남북한 통합과정의 재원조달 확대방안과 법제도적 준비. 북한법연구. 13권.
- 이상만. 20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등 다수

1.3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권리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북한인권 증진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 1)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재원 마련, 2) 북한인권기금(가칭)을 통한 재원 조달, 3)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및 신탁기금 마련, 4) 혁신적 재원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함.

□ 먼저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 중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아래의 항목들로 구분하고, 재원에 따라 각기 특화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임.

<표 1-2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구분>

▶ 국내외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 널리 알리는 활동

▶ 기술협력: 북한 내 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식교류 및 국제교류

▶ 역량강화: 인권법치 교육을 통한 북한주민 역량강화

▶ 책임규명 및 피해구제: 북한의 인권침해 기록 및 책임규명 방안 연구,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구제 지원

▶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내 정보 접근 확대 방안 연구
대북 정보 콘텐츠 개발 지원

▶ 탈북민 북한인권 역량 강화: 북한인권 및 실상 알리기 관련 탈북민 교육

▶ 실태 조사연구: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학술 연구 지원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재원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검토하되, 기존 남북협력기금의 낮은 집행률 및 경제·사회·문화

적 권리 증진 목적에 국한된 기금의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함.

○ 먼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기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살펴보고 해당 활동을 평가함.

○ 다음으로 기존 활동의 한계를 해당 기금의 제도 및 성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특히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함의를 도출함.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기존 남북협력기금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 대안적 재원으로서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써 북한인권기금(가칭) 조성을 검토하되, 북한인권법의 개정과 북한인권기금법(가칭) 제정을 통한 기금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함.

○ 먼저, 북한인권법에 기반한 기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살펴보고 해당 활동을 평가함.

○ 다음으로 기존 활동의 한계를 재원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특히 북한인권법의 개정과 북한인권기금법(가칭) 제정을 통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에 함의를 도출함.

□ 아울러,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의 새로운 재원으로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및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조성 방안을 검토하되,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춤.

○ 먼저, 국제사회가 북한 및 타 국가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가를 검토함.

○ 다음으로 기존 활동의 한계를 재원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특히 권위적 국가의 인권 증진 활동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미국의 NED와 같은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제사회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새로운 재원(ex. NED) 및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조성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끝으로, 새로운 기금 마련에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 국내외 시민사회 및 정치환경에서 비롯되는 실현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한 혁신적 재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1.4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북한인권 관련 기존 문헌 및 데이터분석과 전문가 자문분석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

□ 먼저, 문헌분석은 이벤트 데이터 문서, 법안 문서, 사례 보고 문서 등에 대한 분석을 의미함.

○ 첫째, 북한인권 현황 및 북한인권 증진 활동 현황 등과 관련하여 이벤트 데이터 분석을 시행함.

-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살펴보고, 해당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집행 이벤트 중 북한인권 증진 유관 이벤트를 추출하여 탐색함.
- 최근 5년간 통일백서에 표기된 활동 중 북한인권법에 기반한 이벤트를 추출하여 분석함.

- 최근 5년간 OECD CRS 통계, 미국 NED 데이터, 인권관련 신탁기금 운용 성과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재원으로서 NED 유사 재원 마련 및 신탁기금 개설의 효과를 분석함.

○ 둘째,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관한 법안 및 북한인권법과 연계된 법안 등을 분석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

○ 셋째, 미국의 NED 운용 현황 및 성과, 국제사회의 신탁기금 사례를 검토하여 NED와 유사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 가능성 및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

□ 북한주민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야 전문가, 활동가 등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해당 활동의 촉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표 1-3 북한인권 전문가 자문검토 실시 현황>

전문가	소속/직함	주요 약력 및 전문성	자문 일시(방식)
이신화	(現)북한인권 대사 (現)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前)UNHCR 아프리카 지역관 (前)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인권, 국제정치 및 다자외교 분야 연구	2024년 6월 5일 (온라인 인터뷰)
김영자	(現)북한인권 시민연합 사무국장	(사)아시아인권센터 이사 (前)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차장	2024년 6월 7일 (방문 면담)
Greg Scarlatoiu	(現)Executive Director, HRNK	한국학국제협회 회장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방문교수 한반도 정치안보·경제분야 및 북한인권 연구 28여개 북한인권 상황 관련 보고서 및 서적 출판 총괄	2024년 6월 11일 (방문 면담)

□ 법률 전문가 자문 검토는 연구팀이 제시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안) 관련 법률/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시도하는 연구방법임.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개정안 및 북한 인권 기금법(가칭) 제정안 등 연구팀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표 1-4 법률 전문가 자문검토 실시 현황>

전문가	소속/직함	전문성
도경옥	(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연구위원	국제법,법치주의,국제인권규약,북한 인권, 남북협정 및 북한 제제 연구
김태원	(현)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연구위원	북한인권, 통일관계법, 국제법, 대북 통일정책 연구

제2장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

2.1 남북협력기금 개요

2.1.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배경

□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선언)' 발표를 통해 적대적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로 전환을 선언하였음.

○ 7·7선언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표함으로써, 남북 주민(단체) 간 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4)]

□ 남북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 필요성 대두.

○ 정부는 7·7선언 발표 및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등 대북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시도함.

○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였음.

-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재원을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통일부장관이 다른 기금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 자금 관리 기금, 기금 운용의 수익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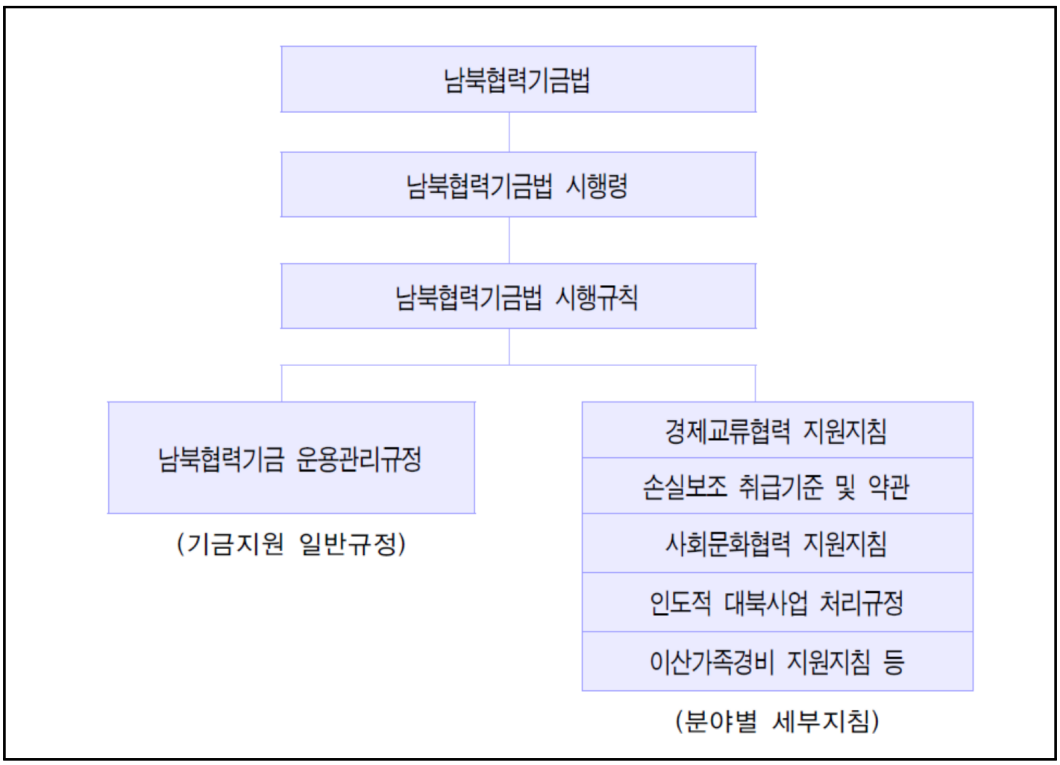
---

4) 북한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응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2005년 채택하였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2024 2월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법」의 하위 법으로 「남북협력기금 시행령」, 「남북협력기금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구체적인 관리·운용방안을 규정하였음.

○ 남북협력기금은 안정적 재원 마련 목적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림 2-1 남북협력기금 법령체계>



출처: 통일부,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통일부, p.5.

2.1.2 남북협력기금 지원 분야

□ 남북협력기금은 유·무상 지원 및 기타 금융지원 분야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

○ 무상지원은 남북 주민 간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거나,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 및 개발지원 등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

원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 지원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대북식량지원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들의 의료·식량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무상지원을 통해서 남북경협 및 교류 과정에서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작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음.

○ 유상지원의 경우 남북경협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남측 사업자 및 이를 관리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통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보완해 주는 보험 및 보증 서비스를 제공함.

<표 2-1 남북협력기금 주요 지원 항목>

	구분	주요내용
무상	주민왕래지원	남북한 주민(법인, 단체 포함)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
	사회문화교류지원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의 교류에 소요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유상	반출·반입자금대출	남한주민이 북한과 교역(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남한주민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대출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	민족 신뢰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
기타	교역·경협보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채무보증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
	금융기관 지원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대출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 지원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지원현황," 연도별 기금 현황, https://www.koreaexim.go.kr/se/HPHFSE052M01(검색일: 2024.06.04.).

2.2 남북협력기금의 북한 인권 지원 현황

□ 남북협력기금은 '91년 첫 기금 지원을 시작으로 '23년 말 기준 총 7.2조원의 집행을 실시함.

○ 해당 기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목적의 집행(이산가족 교류지원 비용 포함)은 약 1.8조원 규모이며, 긴급구호 성격의 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초기(90년대) 식량 지원은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 전달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남한 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직접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음.

○ '90년대 북한의 식량난이 일부 해결되면서 북한 당국은 일회성 성격이 강한 단순 구호 지원보다 안정적으로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

원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함.

- 그 결과, 2000년 이후 대북인도지원 사업은 단순 구호식량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가공·생산 설비 지원, 농축산·보건 분야의 지식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음.

□ 이산가족교류 지원의 경우 전체 집행 금액 중 절반 이상은 인프라 조성에 집중함.

○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85년 최초 실시 이후 제도적으로 정례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남북한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음.

○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 조성 이후 이산가족교류지원 총 집행액 중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교류지원 비용보다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표 2-2 남북협력기금 인권증진 사업 지원 현황('91~'23)>

단위: 백만원*

지원 분야	세부 내용	금액
인도적지원	농축산·산림·환경협력	34,670
	보건의료협력	67,940
	비료지원	798,194
	식량지원	463,645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156,179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	9,009
	인력양성사업	919
	자연재해지원	164,877
소 계		**1,695,433**

이산가족교류지원	교류지원	57,164
	면회소건설	55,058
	면회소운영	1,226
소 계		**113,448**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	농축산·산림·환경협력	1,857
소계		**1,857**
문화협력지원	IT 전문인력 교육	390
	경제인 장학프로그램	290
	영농기술 및 시설 지원	1,086
소 계		**1,766**
합 계		**1,812,504**

* 외화의 경우 당해 연도 평균 환율로 환산하여 합산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지원현황," 연도별 기금 현황, https://www.koreaexim.go.kr/se/HPHFSE052M01(검색일: 2024.06.04.).

□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정치 상황에 따라 집행률의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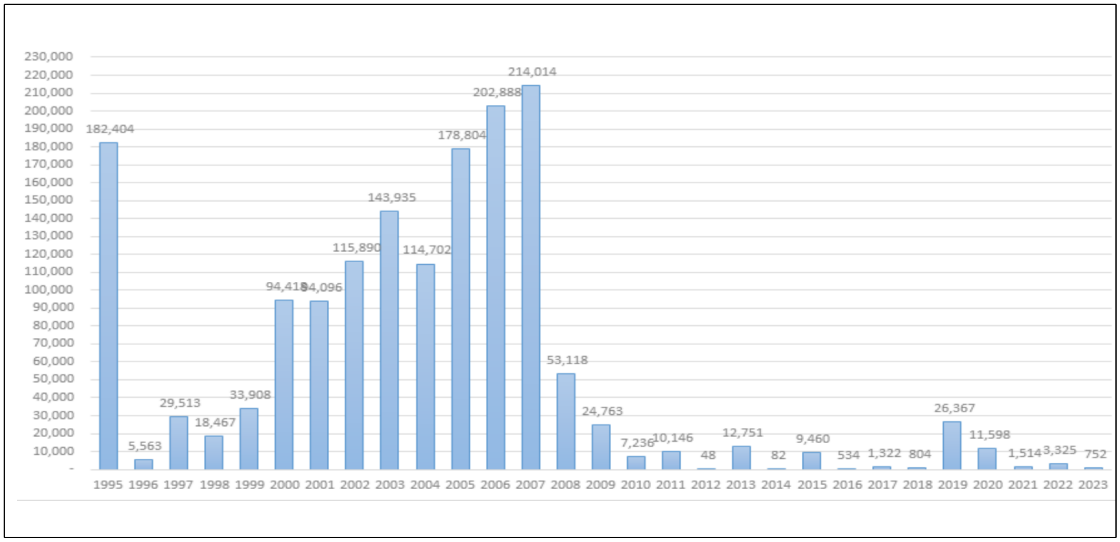
○ 남한에 보수정권이 집권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이 감소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 역시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기금을 통한 인도지원이 식량, 의약품 등 구호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집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하여 강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대북인도지원 활동도 감소하였음.

<그림 2-2 남북협력기금 인권증진 사업 지원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지원현황," 연도별 기금 현황, https://www.koreaexim.go.kr/se/HPHFSE052M01(검색일: 2024.06.04.).

2.3 남북협력기금의 인권증진 사업 활용 가능성 검토

□ 기존 대북인도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

○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집행된 대북인도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3호를 기준으로 집행되었음.

- 대북인도지원사업은 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심사에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를 근거 법률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3호를 통해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으로 구체적 명시를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실시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대북인도지원은 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3.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용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검토.

○ 남북협력기금의 목적 및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중심으로 검토할 경우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우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북한 주민들의 정치·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의 경우 북한 당국의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사업들은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여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권증진 사업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이 우선되어야 함.
-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력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다만,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정치·시민적 권리 부분의 인권사업을 진행할 경우 남북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도발로 인한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바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제3장 북한인권법 개정 및 북한인권기금법(가칭) 제정을 통한 재원조달

3.1 북한인권법 제·개정 경과와 내용 분석

3.1.1 북한인권법 제정 및 개정 경과

가.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

□ 북한이 경제난을 외부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1990년대부터 북한 내부 상황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음.

○ 특히 경제난으로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국 반역죄 처벌 등의 행위가 국제인권규약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이 더욱 거세졌음.

□ 국제사회는 위와 같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왔음.

○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을 채택하고, 2004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을 선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음.

○ 유엔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본회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는 등 북한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왔음.

○ 2014년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를 설립하였으며,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 이슈에 개별적으로도 대응해왔음.

○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음.[5)]

-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청문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 2004년,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2004년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법률로 제정됨.

○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의 인권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가 국제사회와 일본 내에서 큰 이슈로 부상하였는데, 특히 2002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서 일본 내 관련 이슈가 더욱 주목받았음.[6)]

- 일본 국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
- 2006년 일본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음.

□ 위와 같은 국제적 배경하에 한국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국내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남북 간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 등을 다룬 다수의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 예를 들어, 17대 국회에서는 황진하 의원의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2005년 6월), 김문수 의원의 「북한인권법안」(2005년 8월), 정형근 의원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07년 10월)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5) Public Law 108 - 333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https://www.govinfo.gov/app/details/PLAW-108publ333/related (검색일: 2024년 6월 11일).

6) HRNK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in Japan, https://www.hrnk.org/uploads/pdfs/Japan_NKHRA_2005.pdf (검색일: 2024년 6월 11일).

나. 북한인권법 제정 경과

□ 17대 국회 회기 중 2005년 6월 황진하 의원에 의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여러 건의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음.[7)]

○ 18대 국회에서는 5건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루어짐.
-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2008년 7월에 발의됨.
-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이 2008년 7월에 발의됨.
- 홍일표 의원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8년 11월에 발의됨.
- 윤상현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2008년 12월에 발의됨.
- 김동철 의원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이 2011년 6월에 발의됨.

○ 19대 국회에서는 12건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루어짐.
- 윤상현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2012년 6월에 발의됨.
-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2012년 6월에 발의됨.
- 이인제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2012년 8월에 발의됨.
- 조명철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2012년 9월에 발의됨.
- 심재권 의원의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이 2012년 11월에 발의됨.
- 정청래 의원의 「북한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1월에 발의됨.
- 심윤조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2013년 3월에 발의됨.
- 윤후덕 의원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이 2013년 7월에 발의됨.
- 인재근 의원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이 2013년 9월에 발의됨.
- 심재권 의원의 「북한 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11월에 발의됨.
- 심재권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이 2014년 4월에 발의됨.
- 김영우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2014년 11월에 발의됨.

□ 「북한인권법」 발의 과정에서 여야는 관련 법안의 성립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한 바 있음.

---

7) 허준영·김지혜,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17. 제26권 1호(2017), pp. 25-56.

○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도록 하면, 향후 관련 정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음.[8)]

○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관련 법의 제정이 북한 당국에 대북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어, 북측의 반발과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되는 점'과 '「북한인권법」 제정이 오히려 북한 당국의 내부 통제 강화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9)]

□ 이러한 과정에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법안과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건의 법안은 모두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법안이 통과됨.[10)]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2건의 법안 중 11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이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3일 공표, 2016년 9월 4일 시행되었음.

다. 북한인권법 개정 경과

□ 북한인권법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관련 논의 및 개정안 발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 1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만 이루어짐.[11)]

---

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Online Series』 제 8호 (2016), pp. 1-5.
9) Ibid
10) 이상윤,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3), pp. 15-17.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인권법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1%ED%95%9C%EC%9D%B8%EA%B6%8C%EB%B2%95 (검색일: 2024년 5월 29일).

○ 북한인권법 제정 직후 화두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선임 지연과 재단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이었으며, 이사 선임 절차의 개선, 인권 기록의 보존 및 활용 방안 강화,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음.

- 나경원 의원은 2018년 1월, 북한인권기록 관련 기구 일원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함.
- 김재경 의원은 2018년 12월, 북한인권기록 민간 활동지원, 북한인권재단 최초 이사 임명 등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함.

○ 이후 2020년에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을 논의, 특히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역할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논의되었음.

- 조태용 의원은 2020년 8월, 북한인권기록센터 소관업무 규정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함.
- 태영호 의원은 2020년 11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함.

○ 현재까지 인권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김석기 의원은 2021년 1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임명 기한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함.
- 김선교 의원은 2021년 3월, 장애인 우선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하태경 의원은 2022년 8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기한 지정을 통해 인권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함.

3.1.2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분석

가. 법령 구성

□ 「북한인권법」은 다음 표와 같이 총 17개 조로 구성되며, 그 하위에 시행령[12]과 시행규칙[13]을 가짐.

<표 3-1 「북한인권법」의 구성>

번호	내용	번호	내용
제1조	목적	제10조	북한인권재단 설립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11조	재단의 운영
제3조	북한주민에 대한 정의	제12조	재단 임원의 구성
제4조	타 법률과 관계	제13조	북한인권기록센터
제5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14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제6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15조	국회 보고
제7조	남북인권대화 추진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제8조	인도적 지원	제17조	벌칙
제9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인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2507&ancYnChk=0#0000 (검색일: 2024년 5월 29일).

나. 법령 내용

□ (제1조와 제3조) 「북한인권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조항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언급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인권에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본 조항에서 북한 주민이란 제3조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

12) 「북한인권법 시행령」(검색일: 2024년 5월 29일).

13)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86159&efYd=20160904&ancYnChk=0#0000 (검색일: 2024년 5월 29일).

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제2조) 「북한인권법」은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을 바탕으로 국가가 북한인권 증진을 노력해야 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해당 조항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고 있음.

○ 더불어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제4조) 「북한인권법」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함.

□ (제5조와 제6조) 「북한인권법」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의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제5조)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 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함.

○ (제6조)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아래 항목 등을 포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도록 명시함.

-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2조, 제13조) 「북한인권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12조, 제13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활동과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7조)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함.

○ (제8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게, 취약계층 우선으로 추진해야 함을 명시함.

※ 본 조항은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4년 일부 개정됨.

○ (제9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정함.

- 특히 국제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함.

○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정부는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함을 명시함.

- 재단은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음.
- 재단의 운영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함.
- 재단 임원은 통일부와 국회의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통일부장관이 임명함.

○ (제13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과 기록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함.

□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7조) 「북한인권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17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4조) 통일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제15조) 통일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제16조~제17조) 재단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벌칙에 적용받음.

다. 의미와 쟁점

□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러 측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임.

□ 첫째, 「북한인권법」은 오랜 정치적 부침으로 여야 합의를 위한 조항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14)]

○ 「북한인권법」에서는 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태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만을 적시하여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총합 형태로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 범위'를 담고 있지 못함.

○ 북한주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북한이탈주민, 재외 북한이탈주민 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려는 헌법적 의지와 대조적일 뿐 아니라,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둘째, 대북지원과 국제협력의 집행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집행을 위한 기준과 범위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15)]

14) 이상윤,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3), p. 27.
15) 전수미,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7권 4호 (2017), p. 373.

○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조건과 기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인도적 지원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인도적 분야에서 강조되는 국제협력은 환경문제까지 포함하는 등 더욱 높은 차원의 국제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 내 국제협력의 범주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정보교환으로 제한되어있는 바, 본 법령이 국제협력 활동의 범주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셋째,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출범과 예산 마련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칠 주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바, 관련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통일부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여야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되어있으나, 국회에서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안정적인 예산이 마련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관련한 조항의 내용은 산발적이고 모호함.

- 북한인권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북한인권법 제11조에 따르면,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주관하

는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대한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명시하고 있음.

□ 요컨대 「북한인권법」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제정에는 성공하였으나, 관련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북한인권법」 개정안과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3.2 북한인권 증진 활동 분석

□ 본 장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실제 어떠한 활동이 추진되었는가, 어떤 행위자들이 주로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관련 재원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등을 살펴보며, 향후 북한인권 증진 관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함.

○ 특히 관련 활동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 조달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3.2.1 북한인권 증진 활동 조사 방법

□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관련 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추출함.

○ 첫째,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통일백서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시행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이벤트를 추출함.

- 조사 시점인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최근 이벤트를 추출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통일백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 둘째, 국내 기사 검색을 통해 2017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이벤트를 추출함.

- 조사를 수행한 기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네이버 뉴스 검색엔진의 일간지 지면 기사를 검색하여 추출을 시행함.

○ 셋째, 2023년과 2024년에 통일부에서 선정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관련 이벤트를 추출함.

○ 한편 통일백서 분석과 국내 기사 분석을 위한 공동 키워드는 통일부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다음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의 핵심어를 활용하되, 정치시민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인권의 범주를 도입하여 관련 이벤트를 추출함.

<표 3-2 과업 지시서 상 인권증진 활동의 종류와 범위>

▶ 국내외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 널리 알리는 활동

▶ 기술협력: 북한 내 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식교류 및 국제교류

▶ 역량강화: 인권법치 교육을 통한 북한주민 역량강화

▶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내 정부접근 확대 방안 연구
대북 정보 콘텐츠 개발 지원

▶ 탈북민 북한인권 역량 강화: 북한인권 및 실상알리기 관련 탈북민 교육

▶ 실태 조사연구: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학술 연구 지원

▶ 책임규명 및 피해구제: 북한의 인권침해 기록 및 책임규명 방안 연구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구제 지원

- 첫 번째 검색어는 북한인권으로 정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 널리는 알리는 활동을 추출하되,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세부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북한인권 전반을 다루는 이벤트까지 모두 '북한인권' 카테고리로 추출함.

- 두 번째 검색어는 기술협력과 역량강화이며, 북한 내 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식교류 및 국제교류를 추출하되 정치시민권뿐 아니라 경제권까지를 인권 범주 안에 포함하여 기술협력을 추출함.

-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도 인권법치 교육을 통한 북한주민 역량강화뿐 아니라, 기타 경제 교육을 통한 북한 주민 역량강화를 추출하되, 이러한 활동에 기여할 인력 양성 등의 역량강화까지를 포함하여 이벤트를 추출함.

- 네 번째 검색어는 탈북민 인권 교육으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추진된 인권 교육 활동을 이벤트로 추출함.

- 다섯 번째 검색어는 북한 정보로 정하고, 북한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 활동을 관련 이벤트로 추출함.

- 마지막 검색어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로 하며, 관련 활동을 검색하여 이벤트로 추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기록 및 책임규명과 관련한 활동까지를 포함함.

- 단순 추출 후, 2차 검토를 통해 이벤트 내용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이벤트로 재추출하였으며, 개인 의견이나, 단순 예상,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의 경우,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례에서 제외함.

- 기타 항목은 '북한 주민'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인도적 지원의 항목이 추출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더불어, 통일부 제공 자료 분석 및 국내외 주요 민간단체 활동 조사를 통해 북한인권증진 활동에서 행위자 특성과 재원 활용 현황을 파악함.

가. 이슈 분석

□ 통일백서의 이슈 분석은 검색 키워드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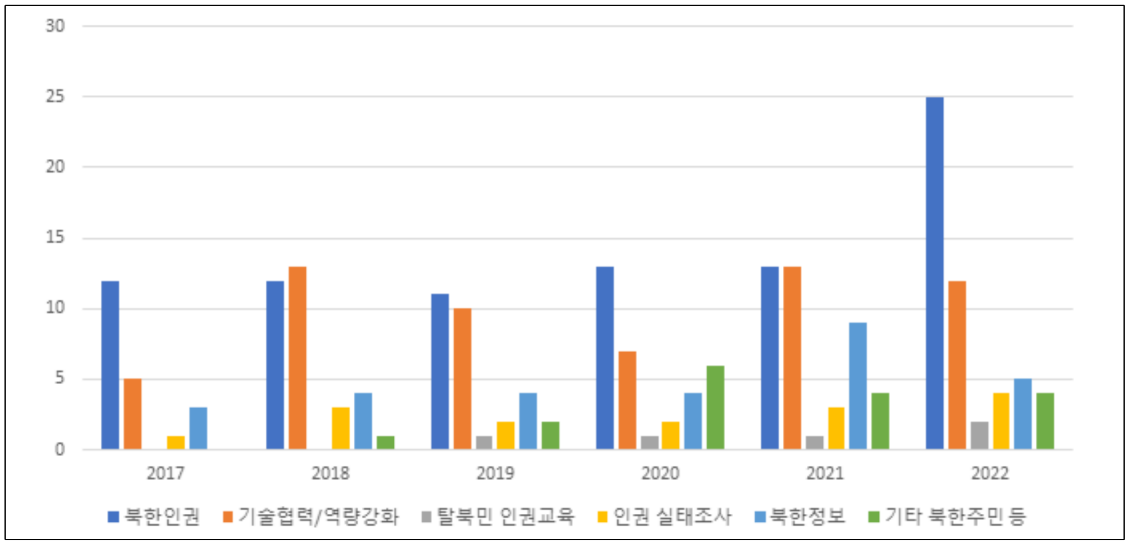
○ 첫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이벤트는 총 212건 추출됨.

○ 둘째, '북한인권' 전반을 다루는 이벤트가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며, 전체의 40.6%를 차지함.

- 북한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활동, 유엔인권결의안 채택 연관 활동 등의 이벤트가 대부분이며, 2017년 이후 지속해서 확인됨.
- 2017년 이후 북한인권 전반을 다루는 이벤트의 빈도는 일정 수준 유지되다가 2022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활동과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 통일백서 북한 인권 증진 이슈별 이벤트 분석>

단위: 건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2018~2023

○ 셋째, 북한과의 기술협력이나 북한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벤트는 전체의 28.3%를 차지하며, 그 외 북한정보 생산 및 유통 관련 이벤트가 13.7% 등을 차지함.

- 기술협력과 역량강화를 키워드로 이벤트를 추출한 결과, '남북공동경제발

전 계획 국제회의' 혹은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심포지엄' 등과 같은 북한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예비적 사업의 성격을 띤 이벤트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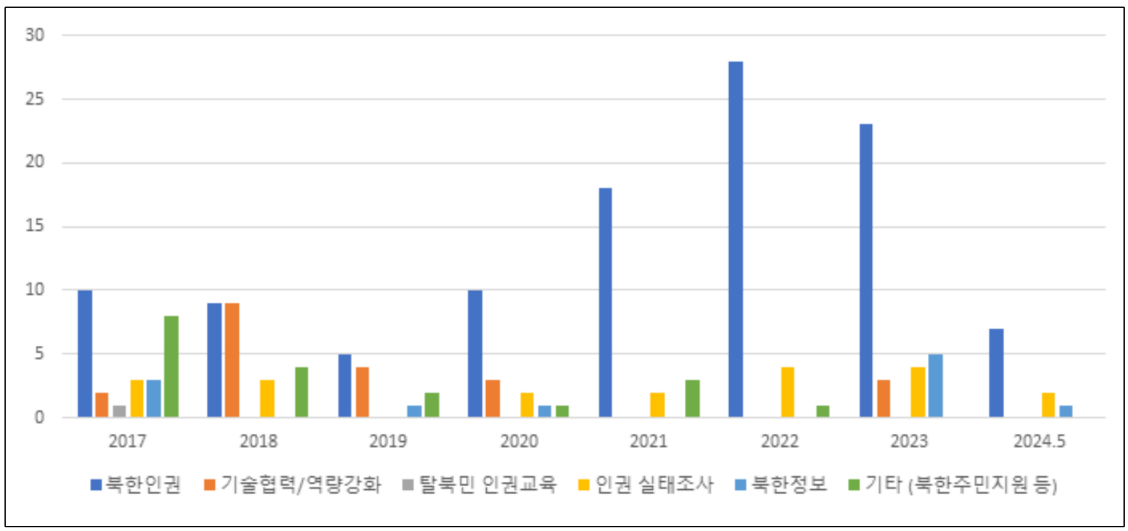
- 북한 정보와 관련하여, 북한정보포털, 북한인권포털,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이 생산되어 상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요컨대, 통일백서 이벤트 추출 결과, 북한인권 증진 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연구 이벤트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이벤트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지면 기사의 이슈 분석은 검색 키워드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그림 3-2 국내 지면 기사 북한 인권 증진 이슈별 이벤트 분석>

단위: 건



자료: 네이버 지면 기사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 첫째, 2017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면 기사에서 보도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이벤트는 총 182건 추출됨.

- 단, 정쟁과 연관한 논의는 추출에서 제외하며, 중복 기사 또한 제외하여 이벤트 조사의 특장점을 살리고자 하였음.

- 동일 이벤트에 대한 중복 기사는 1건으로 정리하였음.

○ 둘째, '북한인권' 전반을 다루는 이벤트 보도가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며, 전체의 60.4%를 차지함.

- 북한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활동, 유엔인권결의안 채택 연관 활동 등의 이벤트가 대부분이며, 2017년 이후 지속해서 관찰됨.
- 2017년 이후 북한인권 전반을 다루는 이벤트의 빈도는 일정 수준 빈도로 보도되다가, 2022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정책 추진 및 관련 행사에 대한 보도 빈도가 크게 증가함.

○ 셋째, 북한과의 기술협력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이벤트를 보도한 경우는 전체의 11.5%를 차지하며, 그 외 북한인권 실태 조사 관련한 이벤트 보도가 각각 11.0%를 차지함.

- 기술협력과 역량강화를 키워드로 이벤트를 추출한 결과, 환경, 여성, 장애인 등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북한 역량 강화 관련 이벤트가 관찰됨.
-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등의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등의 이벤트가 확인됨.

○ 요컨대, 국내 지면 기사 이벤트 추출 결과, 통일백서 대상의 분석과 유사하게 북한인권 증진 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 발표 및 해당 정책 수행과 연관된 이벤트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이벤트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2023년과 2024년에 통일부에서 선정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의 이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2023년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통일부가 선정한 단체는 총 18개이며, 사업별 활동 이슈는 아래와 같이 추출할 수 있음.

<표 3-3 이슈별 통일부가 지원한 민간단체 사업(2023)>

이슈	단체명	사업명
북한 인권	(사)북한민주화 네트워크	COI 설립 10주기 기념 국제 세미나
	(재)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OEE 프로젝트 추진
	(사)세이브엔케이	북한인권 컨벤션
	(사)북한인권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재)국제학술원	북한인권 현인그룹
	통일맘연합회	글로벌 옹호이니셔티브 온라인플랫폼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북한인권 관련 국제 캠페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 기획전시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모임	북한인권 체감 연극
	(사)북한인권 시민연합	덴바람 마파람
	피스브릿지	음악으로 전하는 인권 이야기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북한인권영화 특별전
역량 강화 및 기술 협력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	남북 청소년 희망 캠페인
	(사)프리덤스피커즈 인터내셔널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사업
	(사)과거청산 통합연구원	북한인권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사)통일 아카데미	2023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단
	(사)휴먼아시아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사업
	(사)평화한국	북한 억류자송환을 위한 남북한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

자료: 통일부 제공 자료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둘째, 2023년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통일부가 선정한 단체의 사업들은 북한인권 이슈를 국내외 알리는 이벤트로 요약되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북한인권 전반을 다루는 이벤트,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에 해당하는 이벤트로 구분하여 추출할 수 있음.

- 이슈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확인됨.

○ 셋째, 이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백서와 지면 기사 등을 활용한 이벤트 추출과 유사하게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이벤트보다는 기반조성의 형태를 띠는 간접적인 이벤트가 다수임.

□ 다음으로 2024년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통일부가 선정한 단체는 총 19개이며, 사업별 활동 이슈는 아래와 같이 추출할 수 있음.

<표 3-4 이슈별 통일부가 지원한 민간단체 사업(2024)>

이슈	단체명	사업명
북한인권	(사)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	캐나다 북한인권활동
	(사)남북장애인 치료지원협의체	최신 북한장애인의 인권과 재활, 현재와 미래
	뉴코리아여성연합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는 웹드라마 "The Silent Struggle" 제작
	(사)더메신저	생애주기별로 바라본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사)북한개발연구소	2024년 찾아가는 뮤지컬 "엄마라 부르고 여자라 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함께 알리고 전하자! 북한 아동, 청소년 인권증진 남북 청소년 국내외 캠페인
	(사)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인식제고를 위한 '흥청망청(興靑網靑)' 프로젝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차별 계층에 대한 영상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애드보커시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2024년 청소년을 찾아가는 북한인권 체감연극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 UPR제도를 활용한 북한인권 증진사업
	(사)탈북자동지회	북한인권 영화 '겨울나비3' 제작
	(재)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2024년 북한인권 창작 오페라
	(재)원음방송	이슈톡 : 북적북적
	(사)비욘드더바운더리	PRAY for 통일 Peace, Rights, Appreciation, Youth for 통일
	(사)우리들의 성장이야기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사)자유북한방송	제21회 북한자유주간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사)글로벌청소년센터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사)북한인권	북한인권 국제 협력활동과 모의 ICC 국제형사재판
	(사)통일아카데미	2024 제3기 북한인권아젠다 발굴단

주: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활동도 포함함.
자료: 통일부 제공 자료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둘째, 2023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통일부가 선정한 단체의 사업들은 북한인권 이슈를 국내외 알리는 이벤트로 요약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인권 전반을 다루는 이벤트,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에 해당하는 이벤트로 구분하여 추출할 수

있음.
- 이슈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확인됨.

○ 셋째, 이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백서와 지면 기사 등을 활용한 이벤트 추출과 유사하게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이벤트보다는 기반조성의 형태를 띠는 간접적인 이벤트가 다수임.

나. 행위자 분석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이벤트를 추출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자 특성이 확인됨.

○ 첫째, 통일백서 추출 이벤트의 행위자는 다음의 특징을 가짐.
- 이벤트 대부분은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확인되며,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한 활동과 북한인권 관련 정책 활동이 대부분임.
- 그 외 직간접적인 행위자로 국제사회와 학술단체나 민간단체 등이 존재하나, 남한 정부 정책에 따른 보조적인 행위자로 판단됨.

○ 둘째, 지면 기사에서 추출한 이벤트 내 행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통일백서 추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남한 정부의 정책 추진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함.
- 미국 등 타국 정부 혹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이벤트가 관찰됨.
- 국내외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이 추출됨.

○ 셋째, 통일부 지원 사업은 모두 민간단체 행위자에 의해 추진된 사업임.
- 연속으로 선정된 단체는 (사)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재)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사)통일아카데미 등 7개임.
- 해당 단체의 사업은 사업명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연

속성을 가지는 북한인권을 알리는 사업이나, 북한인권 인력 양성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요컨대, 현재까지 관련 활동의 주요 행위자는 남한 정부 혹은 남한 내 민간단체 등으로 요약되며, 관련 활동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슈로 한정됨.

- 대체로 행위자의 범주는 제한적이나 연속적임.
- 행위자와 대상자(오디언스)가 국내에 치중되어있는 한계가 관찰됨.

□ 구체적인 이벤트 검토를 위해 국내 민간단체 중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통일부 지원을 받은 단체 중 하나인 북한민주화 청년학생 포럼 사례를 살펴봄.[16)]

○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은 2011년 창립되었으며, 북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 및 학생들이 함께 만든 청소년 단체임.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비전기획사업, 인권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 홍보사업, 구호사업 등이 있음.

- 비전기획사업에는 매주 2회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출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청소년들이 멘토링 방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멘토링 사업, 남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북한 아동/청소년 인권증진과 한반도 통일 골든벨 경연대회 등이 있음.
- 인권교육사업에는 남북 청소년 북한 인권 모의재판 대회, 남북 청년대학생 민주주의 리더십 아카데미 등이 있음.
- 국제교류사업에는 북한 아동, 청소년 인권증진 서울 국제 청소년 영어 웅변대회, 북한 인권증진 남 · 북 · 일 청소년 프로젝트 등이 있음.
- 홍보사업에는 북한 아동, 청소년 인권증진 희망음악회 등이 있으며, 구호사업으로는 중국 내 북한 탈북청소년 돕기 구호활동,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장학금 조성 등이 있음.

16) 북한민주화 청년학생 포럼, http://yfnkd.or.kr/ko/ (검색일: 2024년 5월 28일) 내용을 요약 정리함.

- 사업이 대체로 국내 참여자 및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함.

○ 통일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남북 청소년 희망 캠페인(2023년)과 북한 아동, 청소년 인권증진 남북 청소년 국내외 캠페인(2024년) 등 이었음.

○ 현재 웹사이트에 게시된 2023년 활동 11건 중 4건을 제외한 모든 이벤트의 지원이 통일부로 표기되어있음.
- 4건의 활동 중 3건은 지원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한 건은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지원으로 표기됨.

○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은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식은 다양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대체로 재원은 통일부로부터 조달하고 있음을 확인함.

□ 미국 The Committee for Hman Rights in North Korea (이하 HRNK)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다음의 특징을 확인함.[17)]

○ HRNK는 2001년 외교정책 및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출범한 미국 민간단체임.
- HRNK는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당파(超黨派)적인 인권단체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출간하고, 보고서가 제안하는 지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HRNK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수용소 폐쇄, 북한 국격 개방,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제공, 북한에 대한 접근 촉진 및 북한 주민에게 식량 제공 등임.

○ 최근 HRNK는 연구와 출판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7) HRNK, https://www.hrnk.org/ (검색일: 2024년 6월 11일) 내용과 인터뷰(2024. 6. 11)를 참조하여 정리함.

- 북한 독재정권의 북한 주민 권리 침해, 정치범 수용소 및 노동 수용소의 방대한 시스템, 북한 정권에 의한 식량 및 재화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권, 중국으로 탈북한 난민들의 어려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 HRNK의 2023년 활동을 살펴보면,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강의와 발표, 혹은 출판물 발간 기념행사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총 27건의 활동이 확인되며, 15개는 미국 내에서 개최된 이벤트임.
- 나머지 이벤트는 한국,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 개최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벤트임.
- 이벤트의 오디언스는 미국과 한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국민으로 파악되며, 특히 이벤트가 미국 내에서 개최되더라도 다양한 국적의 개인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관련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 본 단체의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재단과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구성됨.
- 2023년까지 미국 국무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4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 없음.

다. 재원 특징: 통일부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 본 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활동의 재원조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이나마 통일부 일반예산 집행을 살펴보도록 함.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기간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의 하위 이벤트를 대상으로 통일부 일반예산이 집행됨.[18)]

18) 통일부 제공 자료 참조

□ 해당 예산이 배분된 사업은 크게 첫째,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둘째,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셋째,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넷째,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 마지막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임.

○ 첫째,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활동과 관련하여 정책 개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유관기관 정책협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예산을 배정함.

- 예산 규모는 2022년 55,460천원, 2023년 55,410천원, 2024년 53,810천원으로 약간의 감소가 관찰되나, 대체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둘째,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주요국 정책협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북한인권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에 예산을 배정함.

- 예산 규모는 2022년 216,775천원, 2023년 323,181천원, 2024년 1,029,225천원으로 최근 크게 증가함.
- 세부 항목별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최근 예산 배정의 큰 증가는 기존의 국제회의 참석이나 국제 인권전문가 초청 회의로 진행되던 사업이 국제 인권 대화 개최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 셋째,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인권 정책 Q&A 자료 개발, 북한인권 참고자료 콘텐츠 개발,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등에 예산을 배정함.

- 예산 규모는 2022년 107,765천원, 2023년 105,409천원, 2024년 81,960천원으로 감소함.
- 세부 항목별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북한인권 정책 Q&A 자료 개발과 북한인권 참고자료 콘텐츠 개발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넷째,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인권 실태 및 책임 규명,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과년 정책개발 등을 위해 예산을 배정함.

- 예산은 2023년에 배정되었으며 약 2,000,000천원 규모임.

○ 마지막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2024년에 새롭게 배정되었으며, 예산은 4,629,000천원임.

○ 요컨대, 통일부 일반예산 집행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전체 예산 규모도 제한적인바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제한적이나마 정기적인 정책 활동을 위한 예산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나, 민관협력 활동이나 국제사회 대상 활동들은 확장성이 매우 제한적임.

3.2.2 효과적인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과제

□ 이슈의 다양성 확대가 요구됨.

○ 이슈와 관련하여 북한인권 전반을 다룬 정책 이벤트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활동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선언적인 논의 단계에 놓여있는 초기 단계로, 향후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활동들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
- 남한 정부 주도의 이슈가 대부분인바, 국제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역량강화 혹은 기술협력 이슈에 대해서도 현재는 북한을 제외한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파악됨.
- 대부분 이벤트는 연구사업이나 세미나 개최이며, 남한 중심의 이벤트와 일부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이벤트에 국한됨.
- 향후 분야별 특화된 역량강화 및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벤트, 예를

들어 인권실태 조사 등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내 자료 생산의 질과 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련 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많은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위자들의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의 지속성 확보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소비하는 청취자 또한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도 있음.

○ 현재 북한인권증진 활동은 정부와 일부 민간단체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확장성 및 효과성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행위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서 국내외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그 외 기타단체와 개인까지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더불어 해외 거주 한국인이나 외국인의 참여까지도 독려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핵심은 많은 사람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힘쓰도록 하는 것인바, 간접행위자로서 다양한 청취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전술된 과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은 필수적일 것임.

○ 「북한인권법」 제정과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제한적으로 통일부 일반예산 집행을 통해 몇몇 활동들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일시적이며 제한적임.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함.

3.3 북한인권기금(가칭)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제안

3.3.1 북한인권기금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현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의 이슈와 행위 주체는 남한 정부의 정책 관련 활동 및 정부 행위자로 제한적이며, 관련 활동을 지원한 재원 또한 매우 제한적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원 조달 마련 근거를 활용하여, 북한인권기금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 북한인권기금을 다양한 이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도입한다면,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인권기금 도입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해롭게 「북한인권기금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북한인권법」의 재원조달 및 집행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요구됨.

○ 「북한인권기금법」은 해당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는가의 항목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해당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관련 활동 지원에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금의 조달 및 집행의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운영의 방식을 명시해야 할 것임.

○ 「북한인권법」 개정과 「북한 인권 기금법」 제정에 대한 제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조하여 제시하고자 함.

3.3.2 북한인권기금 도입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제안

가. 북한인권법 개정의 쟁점

□ 「북한인권법」에서 인권의 정의는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할 만큼 보편적인가?

○ 「북한인권법」에 인권의 정의가 어떻게 제시되어있는가는 관련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시할 수 있는가와 연계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임.

○ 기존 연구에서 「북한인권법」 1조에서 제시된 인권의 개념이 자유권과 생존권만을 적시하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한 인권 즉,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인권의 개념을 감안하여 추후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북한인권법」이 최소한 북한의 정치·시민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경제권)까지는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현재 수준에서도 관련 활동(이슈 분석에서 다룬 대부분의 활동)을 비교적 적절히 담을 수 있다고 판단됨.

□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는가?

○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도록 명시함.
- 정책 수립 및 관련 활동 수행
- 남북인권대화 추진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 국제사회와의 협력
-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한 관련 활동 추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등

○ 단, 정부의 활동을 정책 마련, 남북인권대화 추진, 인도적 지원 등을 별도로 명시하면서도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한다고 적시함.

- 현재와 같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련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실제로 현재 통일부가 관련 활동을 추진 중이나 예산 등의 한계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북한인권법」에서 재원조달 근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는가?

○ 「북한인권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제한적이나마, 「북한인권법」 제11조에 따르면,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주관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대한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애매한 상황임.

○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안으로 북한인권기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인권법」에서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거버넌스가 제시되어있는가?

○ 현재는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과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보조금 등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만 서술되어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인권기금의 설립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단, 북한인권기금 운영의 거버넌스는 북한인권기금법의 제정에 포함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간의 관계에서 추론).

나. 북한인권법 개정안 제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내 남북협력기금을 다루는 방식을 준용하여 「북한인권법」 제4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북한인권기금법」을 따르도록 명시함.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북한인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재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명시한 제11조 규정에 정부의 출연금을 북한인권기금으로 명시함.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북한인권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 · 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 · 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북한인권기금 집행의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권한을 제시해야 함.

○ 단,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임.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협의 · 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3 북한인권기금 도입을 위한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안 제안

가.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의 쟁점

□ 관련 이슈를 충분히 포함하는가?

○ 「북한인권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북한인권기금 도입의 목적인바, 관련 이슈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증진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벤트 이슈를 포함, 「북한인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활동은 아래와 같으며, 비교적 포괄적이라 평가됨.

- 정책 수립 및 관련 활동 수행
- 남북인권대화 추진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 국제사회와의 협력
-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한 관련 활동 추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등

□ 관련 행위자를 충분히 포함하는가?

○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 증진 활동이 북한주민을 위한 활동임을 정하고 있는 것 이외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행위자를 구획하고 있지 않음.

-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나, 누가 하는 것인가는 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행위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시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외국 국적 행위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안되어야 함.

□ 효율적인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는가?

○ 현재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지연되면서 대부분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은 통일부 일반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의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그림 3-3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활동 추진 거버넌스>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추진 절차	시행 주체	절차 내용
① 계획 수립	통일부	○ 북한인권개선 정책 기획 및 조정계획 수립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관련 계획 수립
⇩		
② 사업 시행	통일부	○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 및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및 국내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강화 ○ 북한인권증진 대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 시행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③ 사업결과 점검 및 관리	통일부	○ 국회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집행결과 점검 및 다음 회계연도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 ○ 감사원 결산감사 및 재정성과평가 등을 통한 사업집행 점검 및 관리
⇩		
④ 환류	통일부	○ 차년도 사업의 계획수립 등에 반영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 파악·평가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심의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3년) 수립 →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국회보고 →
매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관련 국회 보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안건 작성 및 자문요청 →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위원 의견수렴 → 정책,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추진

자료: 통일부 제공 자료.

○ 정책과 일관된 활동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의 거버넌스와 북한인권기금 집행 거버넌스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과 유사한 접근임.

○ 따라서 북한인권기금 운영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수립할 것을 제안함.

나.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안 제안

□ 북한인권기금법은 남북협력기금법을 차용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북한인권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

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 · 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북한인권대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활동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4.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북한인권 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 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단, 「북한인권기금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국가재정법」 제5조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려면 기금 관련 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제4장 별도 재단 신설을 통한 재원조달

4.1 미국 NED[19] 기반 인권증진 활동 현황

4.1.1 NED의 개요[20]

□ 1983년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으로 설립.

○ 전 세계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institution)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국내외 단체에 보조금(grant)을 지원함으로써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

○ 공정한 선거의 제도적 기반과 절차를 강화, 자유 민주주의 공고화, 법치 확립, 개인의 자유 보호, 사회적 다양성 촉진.

□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2,000건 이상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

○ 의회의 지출 승인을 받고 국무부를 통해 지급된 예산을 활용.

○ 할당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NED 이사회의 독자적인 권한.

□ NED는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모든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 미국 의회, 국무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회계 감사 실시.

---

19)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미국 민주주의 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하 NED)

20) 이하 강우창, "세계 민주주의 증진과 한국 국회의 역할," (2023), at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board=kor_special&intSeq=22185 (검색일: 2024.5.30.). ;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Resource Summary," (2012), at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1143.pdf (검색일: 2024.5.30.).에서 요약

4.1.2 NED의 근거법[21)]

□ '22 USC CHAPTER 54, SUBCHAPTER II: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로 1983년에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

○ 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4-1 NED 근거 법령>

Title 22—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
CHAPTER 54—PRIVATE ORGANIZATION ASSISTANCE
SUBCHAPTER II—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4411. 기금의 목적(Statement of Purposes)

(a) 의회는 워싱턴 D.C.에 미국 정부의 기관이 아닌 사립 비영리 법인인 민주주의 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하 "기금"으로 언급함)이 설립되었음을 확인한다.

(b) 법인 정관에 명시된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권리와 자유(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포함하여)와 같은 민주적 제도의 운영에 필수적인 활동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제도(free and democratic institutions)를 장려;
(2) 미국 민간 부문 단체(특히 두 주요 미국 정당, 노동 및 기업)와 해외 민주 단체 간의 교류를 촉진;
(3) 민주적 훈련 프로그램과 해외 민주적 제도 구축에서 미국의 비정부 부문에 참여(특히 두 주요 미국 정당, 노동, 기업 및 기타 민간 부문 단체를 통해)를 촉진;
(4) 현지 민주 세력(indigenous democratic forces)과 협력하여 적시의 조치를 통해 해외 민주적 선거 과정(democratic electoral processes)을 강화;
(5) 두 주요 미국 정당, 노동, 기업 및 기타 미국 민간 부문 단체의 참여를 지원

21) "22 USC CHAPTER 54, SUBCHAPTER II: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t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22/chapter54/subchapter2&edition=prelim (검색일: 2024.5.30.).

하여 민주적 다원주의(democratic pluralism)의 문화적 가치, 제도 및 조직에 헌신하는 해외 단체와의 협력을 증진;

(6)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다른 나라의 민주적 단체들의 특정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발전의 설립과 성장을 장려.

§4412. 기금의 재원(Grants to the Endowment)

(a) 허가; 재원; 기여금 협정 (Authorization; funding; grant agreement)
미국 정보국(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국장은 기금이 이 제목의 4411(b) 항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에 연간 기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금은 기금에 대한 기여금으로 구체적으로 할당된 자금 또는 정보국의 " 급여 및 경비(Salaries and Expenses)" 계정에 할당된 자금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기여금은 국장과 기금 간의 기여금 협정에 따라 지급되며, 기여금은 기금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이 제목의 4411(b) 항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활동에만 사용되고, 기금이 이 섹션의 (e) 항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그리고 기금이 이 하위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여금 협정은 이 하위장에 명시된 요구 사항 외에 기금이 다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b) 목적 구현(Implementation of purposes)
그렇게 부여된 자금은 기금이 이 제목의 4411(b) 항에 설명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정보국에 할당된 자금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한 적용 가능한 제한은 기금에 부여된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기금의 상태(Status of Endowment)
이 하위 장의 어떤 내용을, 기금을 미국 정부의 기관 또는 설립 기관으로 만들거나, 기금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들을 미국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d) 적용되는 감독 절차(Oversight procedures applicable)
기금 및 그 기여금 수령자는 의회의 적절한 감독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e) 생략

(f) 독립노동 조합(independent labor unions)
이 하위 장의 어떤 내용도 기금이 독립노동 조합에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4413. 보조금에 대한 기금의 적격성(Eligibility of the Endowment for grants)

(a) 법적 요구 사항 준수(Compliance with statutory requirements)
이 하위장(subchapter)에 따라 기금(Endowment)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기금이 이 섹션(section) 및 이 하위장의 다른 곳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b) 민간 부문 그룹 및 해당 프로그램에만 자금 지원(Funding for private sector groups and covered programs only)
(1) 기금은 민간 부문 그룹(private sector groups)의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다.
(2) 기금은 §4411(b)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c) 기금 임직원의 보수 등(Compensation, etc., for officers and employees of Endowment)
(1) 기금의 임원(officers)은 기금 이외의 출처로부터 고용 기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급여 또는 기타 보수(compensation)를 받을 수 없다.
(2) 미국 정부의 임원(officer) 또는 직원(employee)이 기금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또는 기금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기금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보수나 여행 경비를 받을 수 없다.

(d) 재무 사항 관련 금지 사항(Prohibitions respecting financial matters)
(1) 기금은 주식(shares of stock)을 발행하거나 배당금(dividends)을 선언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의 자산(assets) 일부는 이사회의 구성원(Board member), 기금의 임원(officer) 또는 직원(employee) 또는 기타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없으며, 서비스에 대한 급여 또는 합리적인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 외에는 안 된다.

(e) 계좌 감사; 보고 요구 사항(Audit of accounts; reporting requirements)
(1) 기금의 계좌(accounts)는 독립된 공인 회계사(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또는 미국의 주(State)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political subdivision)의 규제 기관에 의해 인증된 독립된 공인 회계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에 따라 매년 감사 되어야 한다. 감사는 기금의 계좌가 일반적으로 보관되는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감사에 필요한 모든 서적, 계좌, 재무 기록(financial records), 보고서, 파일 및

기타 모든 문서, 물품 또는 기금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은 감사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예금자, 재정 대리인(fiscal agents) 및 관리자가 보유한 자산과의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독립 감사 보고서(report of each such independent audit)는 §4413(h)에서 요구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감사의 범위(scope of the audit)를 명시하고, 기금의 자산(assets)과 부채(liabilities), 잉여금(surplus) 또는 적자(deficit)를 공정하게 표시하는 데 필요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연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진술서 및 자금 사용(application of funds)에 대한 진술서와 함께 독립 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f) 재무 거래 감사; 보고 요구 사항(Audit of financial transactions; reporting requirements)

(1) 기금의 각 회계연도(fiscal year)에 대한 재무 거래(financial transactions)는 미국 회계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의해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감사될 수 있다. 감사는 기금의 계좌가 일반적으로 보관되는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미국 회계 감사원의 대표는 기금의 재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적, 계좌, 기록, 보고서, 파일 및 기타 모든 문서, 물품 또는 기금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예금자, 재정 대리인(fiscal agents) 및 관리자가 보유한 자산과의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적, 계좌, 기록, 보고서, 파일, 문서 및 기금의 재산은 기금의 소유와 관리에 남아 있어야 한다.

(2) 각 감사 보고서는 미국 회계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이 의회(Congress)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기금의 재무 운영(financial operations) 및 상태(condition)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과 정보 및 이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관찰된 프로그램, 지출(expenditure) 또는 기타 재무 거래나 사업으로서 이 하위장(subchapter)의 요구 사항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각 보고서의 사본은 의회에 제출될 때 대통령과 기금에도 제공해야 한다.

4.1.3 NED의 재원

□ 의회(Congress)의 연례 예산 할당(Annual Appropriation from Congress)

과 미국 국무부[22]의 지원이 주요 재원.

○ 아래의 2021,2022년 NED의 재무 보고서에 수록된 활동 명세서 참고.

<표 4-2 NED 활동 명세서(Statement of Activities)>[23]

수익 (Revenue)

(천 달러)

항 목	2022	2021
미국 정부 보조금 수익 (Grant revenue - U.S. government)	321,203	251,697
기타 보조금 수익 (Grant revenue - other sources)	245	-
기부금 (Contributions)	253	1,273
잡수익	158	830
총 수익 (Total Revenue)	321,859	253,801

비용 (Expenses)

(천 달러)

항 목	2022	2021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 (Federal programs and activities)	280,258	206,225
기금 이니셔티브 (Endowment initiatives)	6,263	5,413
긴급 대응 (Emergency response)[24]	2,983	2,259
기타 활동 (Other activities)	1,393	648
총 프로그램 서비스 비용 (Total Program Services)	290,896	214,545
총 비용 (Total Expenses)	322,806	252,430

순자산 변화분	-947	1,371

22) 1983년 당시에는 미국 정보국(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USIA)이 담당하였으나 1999년 10월 이후로 국무부로 USIA의 기능이 이관되었음. 한국사총설DB, "Ⅰ. 미국의 해외선전과 미국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 USIA)," 해외사료총서, at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fs_013_0050_0010 (검색일: 2024.5.30.).

23)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Financial Report 2022," at https://www.ned.org/2022-annual-report/ (검색일: 2024.5.30.).

24)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핵심 기관 직원들과 가족 등을 대피시키는 긴급 대응 작업에 참여했으며, 제3국에서 임시 안전 피난처, 식량 제공 등으로 난민 재정착을 지원하였음.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Financial Report 2022," at https://www.ned.org/2022-annual-report/ (검색일: 2024.5.30.).

4.1.4 NED의 핵심 제휴기관(core grantee)[25)]

□ NED의 핵심 제휴기관은 연대센터, 국제기업센터, 국제공화주의연구소, 그리고 미국민주주의연구소로, 동일한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구 간의 균형 유지와 조직 구성에서 초당파성에 신경을 쓰고 있음.

○ 미 의회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NED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균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함.

○ 연대센터(Solidarity Center):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증진

○ 국제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자유 시장과 경제 개혁

○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다양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 미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DI): 다양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4.1.5 NED의 운영[26)]

□ NED는 비정부기구(NGO)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독립 언론, 인권 및 기타 필수적인 민주적 기관, 가치 및 과정을 육성함.

□ NED의 자금 지원 결정은 초당적 이사회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실행함.

25) 이하 강우창(2023)에서 요약

26)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Resource Summary," (2012), at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1143.pdf (검색일: 2024.5.30.).

□ NED는 2011년 현재 145명의 정규 직원과 7명의 시간제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조금 관리, 재정 감독, 연구 및 홍보를 담당.

□ NED는 국무부와 협상을 통해 2010년 14.1%, 2011년 16.9%의 간접비(기관 운영비 등[27]) 책정(증가 이유는 IT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증가).

4.1.6 NED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 NED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약 100개국에서 연간 약 1,200개의 보조금을 제공.

○ 국제 민주주의 연구 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 지원.
- '민주주의 저널(Journal of Democracy)' 발행, '레이건-파셀 펠로우 프로그램(Reagan-Fascell Fellows Program)'[28]을 운영.

○ 전 세계 민주주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위한 글로벌 허브인 '세계 민주주의 운동(World Movement for Democracy)'을 운영.

○ 해외 미디어 지원 강화를 연구하고 권고하는 '국제 미디어 지원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Media Assistance)'를 운영.

□ NED 프로그램 영역[29]은 아래와 같음.

---

27) 협상 간접비 회수 협정(Negotiated Indirect Cost Recovery Agreement, NICRA)에 따라 정해지며, 기금의 급여 및 복리후생, 출장비, 사무실 공간 비용, 통신 비용 등이 간접비에 해당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Resource Summary," (2012), at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1143.pdf (검색일: 2024.5.30.).

28) NED에서 운영하는 국제 교환 프로그램으로 전 미국 대통령 Ronald Reagan과 하원의원 Dante Fascell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워싱턴 D.C.에 위치한 NED에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활동가, 학자, 기자, 시민사회 지도자들에게 5개월 동안 독립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 Christineb, "LEARN ABOUT OUR REAGAN-FASCELL DEMOCRACY FELLOWSHIP PROGRAM," (August 9, 2018), at https://www.ned.org/learn-about-our-reagan-fascell-democracy-fellowship-program/ (검색일: 2024.5.30.).

29)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Resource Summary," (2012), at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1143.pdf (검색일: 2024.5.30.).

○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 민주적 사상과 가치 (Democratic Ideas & Values) ○ 인권(Human Rights) ○ 법치(Rule of Law) ○ 정보의 자유 (Freedom of Information) ○ 책임성(Accountability)	○ 시민 교육(Civic Education) ○ 정치제도 강화 (Strengthening Political Institutions) ○ NGO 강화(NGO Strengthening) ○ 시장 경제 개발 (Developing Market Economy) ○ 분쟁 해결(Conflict Resolution) ○ 정치 과정(Political Processes)

□ 프로그램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3~5년마다 개정되는 전략기획서(strategy document)를 따르며, 2011년 현재 전략기획서는 약 100개국의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다섯 가지 개념적 범주를 우선함.

○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공간 확보 지원 ○ 반권위주의(semi-authoritarian) 국가에서 민주주의자와 민주화 과정 지원 ○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성공 지원 ○ 내분, 내전 등 갈등 후 민주주의 구축 지원 ○ 이슬람 세계에서의 민주주의 지원

4.1.7 NED의 프로젝트 평가

□ NED는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로 프로젝트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NED의 보조금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NED의 지원이

수혜단체의 조직 역량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며, 수혜단체에 맞춘 모니터링, 관리 및 평가를 제공하고 있음.

□ NED 프로그램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수혜 기관을 방문, 기관 활동을 관찰하며, 프로젝트 설계, 평가 및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4.1.8 NED의 민주주의 증진 활동 사례(중국, 북한)

가. NED의 중국 사업

□ 미디어 및 출판 지원

○ 1990년대에 NED는 중국 내 미디어 및 출판 지원을 위해 총 4,975 천 달러를 지급.

○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민주적 중국'(Democratic China) 잡지로, 1990년대 동안 총 9건의 보조금을 통해 $585,000 수령, 중국 본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의 민주화 과정을 논의.

○ 차이나 퍼스펙티브(China Perspective, Inc.): '중국 지성'(The Chinese Intellectual)이라는 분기별 잡지를 출판하며, 이 잡지를 통해 중국 독자들에게 민주적 가치를 전파하였고 1990년대 동안 총 7건의 $566,892를 지원받음.

○ 중국의 언론 자유 수호자(China's Press Freedom Guardian): 격주 발행되는 프로-민주주의 중국어 신문으로, 1990년대에 8건 총 446천 달러를 지원받음.

○ 중국 경제학자 협회(The Chinese Economists Society): 시장 경제의 이점에 대한 교육적 책자 시리즈 준비, 정치 개혁에 관한 월간 모노그래프,

망명 중인 반체제 인사들이 쓴 기사가 수록된 저널, 민주주의에 관한 책 시리즈 등을 출판하는 데 총 405천 달러를 지원받음.

○ 새시대(The New Era): 격주 발행 인쇄본 신문으로 중국 시민들에게 대안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인권 및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연설과 정책 성명을 전문으로 싣고 있으며, 신문은 1990년대에 총 $324,786의 NED 보조금을 받음.

○ 중국 전략 연구소(The China Strategic Institute): 중국의 헌법 개혁에 관한 연구, 글 작성 및 출판을 위해 두 건의 보조금을 통해 총 300천 달러를 지원받음.

○ 현대 중국 센터(The Center for Modern China): 265천 달러를 받아 '현대 중국 연구'(Modern China Studies)와 '현대 중국 저널'(Journal of Contemporary China)이라는 두 저널 및 중국 법률 학교에서 사용될 법의 지배에 초점을 맞춘 책 시리즈를 발간.

○ 프린스턴 중국 이니셔티브(Princeton China Initiative): 234천 달러를 받아 중국 망명 지식인들의 글이 실린 두 저널, '더 로드'(The Road)와 '차이나 포커스'(China Focus) 등 지속적인 월간물 출판.

○ 기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50천 달러를 받은 21세기 중국 재단(Foundation for China in the 21st Century)은 티베트와 대만의 민주 발전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출판.

- 99천 달러를 받은 티베트 기금(The Tibet Fund)은 티베트인들에게 현재 사건과 정책 문제를 교육하기 위한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및 배포.
- 88천 달러를 받은 '오늘'(Today)이라는 중국 문학잡지는 정부 검열 없이 중국 작가들의 문학 비평 및 새로운 소설을 계속 출판, 배포.

□ 노동운동 지원

○ 1990년대 NED는 중국 내 노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128천 달러를 지급.

○ 2,520천 달러는 아시아계 미국인 자유노동연구소(Asian-American Free Labor Institute, AAFLI)에 제공: AAFLI는 중국과 홍콩의 노동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동자 권리 증진, 노동권 침해 정보 전파, 대만의 노동조합 지원, 중국 노동 게시(Bulletin) 및 중국 노동 노트(Note) 출판, 마카오에서의 노동자 조직화 작업을 지원.

○ 1,605천 달러는 라오가이 연구재단(Laogai Research Foundation)과 국제노동연대센터(American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에 제공: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국제 노동 기준 준수 촉진, 노동 이슈에 관한 회의 후원.

□ 선거 지원

○ NED는 1990년대에 중국에서의 선거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건 총 3,398천 달러를 지급.

○ 총 1,191천 달러를 받은 국제공화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는 선거 개혁 촉진을 목표로 중국의 선거 절차 교육, 현재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 연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중국 정부 로비 활동에 사용.

○ 875천 달러를 받은 중국의 마을 및 타운십 협회(China's Association of Towns and Townships)는 지역 선거법 개정 및 선거 관리자 교육을 지원.

○ 1,332천 달러는 미국 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DI)와 중국 전략 연구소(China Strategic Institute)의 홍콩 선거 과정 분석 및 중국 선거 시스템의 실패에 관한 연구논문 발

표를 지원.

□ 인권운동 지원

○ 1990년대, NED는 중국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해 $2,746,099를 지원.

○ 1,133천 달러는 중국 인권(Human Rights in China, Inc.)에게 제공되어 정치범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중국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교육하는 자료를 출판하며, 인권침해를 문서화 및 공개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 기록 개선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 376천 달러를 받은 라오가이 연구재단은 중국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관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유지, 정치범 구금을 국내외에 공개, 인권 핸드북 제작 및 배포, 공개 처형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

□ 교육 관련 활동

○ 1990년대, NED는 중국의 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25천 달러를 지급.

○ 305천 달러를 받은 민주주의국가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략 계획 기법 교육, 조직의 사무소 확장, 비폭력 수단을 통한 정부 반대 훈련 등을 실시.

○ 155천 달러를 받은 중국 인권(Human Rights in China, Inc.)은 1994년에 '인권 교육 및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중국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교육 자료를 생산, 유통.

○ 129천 달러를 받은 중국 인권과 민주주의 재단(Found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China)은 중국의 민주적 교육 촉진과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이 제시하는 해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

□ 기타 사례

○ 알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Albert Einstein Institute), 현대 중국 센터(Center for Modern China), 인권 연구 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독립 중국 학생 및 학자 연맹(Independent Federation of Chinese Students and Scholars), 국제 티베트 개발 기금(International Fund for the Development of Tibet), 국제 티베트 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중국 국가 보건 및 교육 위원회(China's National Health and Education Committee), 티베트 기금(The Tibet Fund), 티베트 멀티미디어 센터(Tibet Multimedia Center), 티베트 젊은 불교 협회(Tibetan Young Buddhist Association), 정치 저항 위원회(Political Defiance Committee) 등.

○ 민주주의에 관한 2주 훈련 과정, 중국 및 티베트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회의, 전략 계획 및 기초 조직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티베트의 민주주의 발전 촉진, 농촌 티베트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서면 자료 및 오디오 카세트 생산, 비폭력 정치 행동에 대한 중국 시민 교육, 티베트 청소년을 위한 시민 교육 등을 전개.

□ 비즈니스 및 경제 관련 활동

○ 1990년대 NED는 중국의 비즈니스 및 경제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92,779를 지급.

○ 6건, 428천 달러를 받은 중국 경제학자 협회(Chinese Economists Society)는 중국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회의, 국영 산업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심포지엄, 광둥성의 금융 부문의 민영화 촉진, 중국의 사기업가들과 정부 간의 대화 촉진을 위한 포럼, 젊은 중국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업 경영 훈련 센터' 설립, 시장 경제와 사회 복지 증진 간의 연관성을 강조

하는 베이징 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는 데 사용.

○ 133천 달러를 받은 중국 경제 연구 센터(China Center for Economic Research)는 1998년에 중국 경제 네트워크 및 젊은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

○ 4건, 129천 달러를 받은 유니룰 경제 연구소(Unirule Institute of Economics)는 1990년대 기업가, 학계 인사, 정부 관료,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 개혁 이슈에 대한 격주 포럼 및 토론을 개최.

○ 2건, 133천 달러를 받은 현대 중국 센터는 1991년에 중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자유 시장의 해법을 다루는 학술 논문 시리즈를 출판 및 배포.

나. NED의 북한 사업

□ NED는 북한 관련 활동을 진행 중이며, 최근 자료인 21년도 활동 자료는 아래와 같음

<표 4-3 2021년 NED의 북한 관련 지원금>[30]

단위: 천 달러

순번	기관명	지원액	상세 활동
1	통일미디어그룹 (Unification Media Group)	760	매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뉴스와 분석,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평을 제공하고, 시민 교육에 중점을 둔 새로운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
2	북한개발연구소 (North Korea Development Institute)	493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교육 및 토론 시리즈를 조직하고, 북한 인권 단체와 이해관계자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지역 수준에서 민주적 변화를 촉진할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3	한국여성과 정치센터 (Center for Korean Women and Politics)	430	탈북 청소년에게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4	유니버설 라이트 (Universal Rights)	416	아시아 지역의 시민 기자들이 작성하거나 기여한 뉴스와 개발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잡지를 제작하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널리즘의 질을 높일 기회를 제공
5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400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캠페인을 공동 개발하고 실행하며, 청소년 북한 인권 이사회를 구성하여 남한 청소년이 북한 인권 문제와 정책에 대해 더 잘 알게 하고, 시민 담론과 행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6	국제민간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392	기업가 정신과 자유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가 커뮤니티를 육성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여 시장 중심의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
7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350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에게 북한 인권,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교육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북한 인권 운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
8	글로벌 권리준수재단 (Stichting Global Rights Compliance Foundation)	319	법적 멘토십을 통해 북한 인권 단체의 법적 책임 추구 능력을 강화하고, 파트너 조직과 공동 옹호 전략을 추진하며, 북한 인권 단체와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자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
9	엔케이와치(NK Watch)	290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인권침해를 문서화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을 대신하여 유엔에 청원을 제출하며, 수집된 증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수행
10	세이브 노스코리아	260	매주 1시간 동안 뉴스, 강의, 토론으로 구성된

30) Christineb, "NORTH KOREA 2021," (14 February, 2022), NED at https://www.ned.org/region/asia/north-korea-2021/ (검색일: 2024.5.30.).

	(Save North Korea)		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11	민주적 규범, 사상 및 가치 (Democratic Norms, Ideas and Values)	195	아시아 지역의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혁 모델과 방안을 탐색하고 논의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구상할 기회를 제공
12	인터랩(Interlab)	175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 활동가에게 디지털 보안 지원 및 교육,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북한 인권 커뮤니티에 대한 디지털 위협 분석을 수행
13	시민 참여와 포용 (Citizen Participation and Inclusion)	140	민주주의, 인권, 시민 참여, 자유 시장에 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남한 대중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회의를 조직하며, 북한 인권운동에 기여할 행동 계획을 마련
14	통일아카데미 (Unification Academy)	140	북한 개혁 담론에서 국제 협약 및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국제법, 개발 전문가와 협력하여 일련의 정책 보고서를 발행
15	우리온 (Unity of Bridge Woorion)	80	탈북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와 졸업생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북한 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
16	코리아 퓨처 이니셔티브 (Korea Future Initiative CIO)	61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에 관한 월간 교육 워크숍 및 토론 포럼을 통해 탈북 여성 활동가를 양성하고, 탈북 학생들을 위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이벤트를 조직하여 리더십 기술을 발휘하도록 지원
총계		4,901	

4.2 NED 기반 인권 증진 활동의 특징과 한계

4.2.1 NED 활동의 특징[31)]

□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민감한 상황에서 민주 세력에 정치적 지원 제공.[32)]

□ 핵심 기관(core grantees)을 통해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복잡한 요구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제공.

□ 현지 지식인과 실무자 간의 다리 역할을 하여 민주적 변화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

□ NED는 비정부기구로서 미국 정부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의 보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NED는 비정부기구로서 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억압적이거나 민감한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요소.

○ NED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정치 환경에서 대안 세력 등에 정치적 동력을 지원하며,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연합(coalition) 형성을 이용하거나, 선거 활동과 미디어 제작 지원 등이 존재.

□ NED는 공식적 정부 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독립재단인 조직 특성상 급격한 정치적 변동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 가능.[33)]

---

31) "DEMOCRACY PROMOTION PROGRAMS FUNDED BY THE US GOVERNMENT: A REPORT TO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ND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US CONGRESS," pp. 39-42, at https://pdf.usaid.gov/pdf_docs/Pcaaa756.pdf (검색일: 2024.5.30.).

32) Ibid

○ NED의 독립성과 규모의 이점, 비관료적 구조는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유연성과 신속성을 제공하며, 이는 지원국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 유리.

○ 예를 들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유럽에서 적시의 선거 지원을 제공한 바 있음.

□ NED의 독립성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단체들과 일하는 것에도 유리.[34)]

□ NED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노력으로 출범했으며, 이는 NED 활동이 정치적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의회로부터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기반이 됨.[35)]

4.2.2 NED 활동의 한계

□ 내정 불간섭 등 외교적 문제

○ NED는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아 초당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미국 외부에서 볼 때 미국의 정치적 도구로 인식될 수 있어 NED의 활동이 해당 국가의 내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 존재.

□ 재정적 독립성의 한계

○ NED는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서

33) Hale, Eric T.,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Ph. D. Dissertation, 2003), at https://repository.lsu.edu/cgi/viewcontent.cgi?article=3773&context=gradschool_dissertations (검색일: 2024.5.30.).

34) "DEMOCRACY PROMOTION PROGRAMS FUNDED BY THE US GOVERNMENT: A REPORT TO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ND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US CONGRESS," pp. 39-42, at https://pdf.usaid.gov/pdf_docs/Pcaaa756.pdf (검색일: 2024.5.30.).

35) Ibid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음.

○ NED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선호를 보이는 등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꺼리는 단체들과의 협력에 한계 존재.

□ 신속한 대응의 부작용

○ NED는 정부조직에 비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면이 있지만, 충분한 현지 상황 분석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 없이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음.

○ 즉,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저하 가능성 존재함.

□ 문화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개입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 NED의 활동이 때때로 현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NED는 정부 간 공식 관계가 없거나 개입을 원치 않는 등 환경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 존재함.
○ 그 과정에서 NED의 개입이 민족 간, 부족 간 등 적대적 관계를 불러일으키거나 국가 내 분열 등 갈등 악화됨.

○ 요컨대, NED의 활동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함.

4.3 (가칭)K-NED 설립을 위한 검토

4.3.1 북한인권재단과 별도의 재단 설립 검토

□ 명확한 목표 설정

○ 재단의 설립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NED와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목표를 가질지 결정 필요.

○ 이를 통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재단의 활동 방향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 필요: ex. 북한 인권 증진 보다는 '인권' 증진 기금으로 설립하여 하부 사업 컨텐츠에 북한 인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용이.

□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

○ 재단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

□ 재정 자원 확보

○ 재단의 주된 재정 자원을 정부 출연으로 하되, 민간 기부, 기업후원 등 다양한 자금원에 대한 고려 필요: 이를 위해 기부 캠페인, 후원 프로그램,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

□ 독립성 보장

○ 재단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확보.

○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 운영 원칙 등 명확화.

□ 투명성 강화

○ 자금 사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계 감사와 보고서 공개 원칙.

○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연례 보고서를 발간: 재단의 재정 상황과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부자와 후원자들의 신뢰 확보.

□ 효과적인 관리 및 평가 시스템

○ 프로젝트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전략 수정.

□ 지역적 특성 고려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계획: 현지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설계.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지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제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단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4.3.2 (가칭)K-NED 설립의 SWOT 분석

□ 강점 요인(Strengths)

○ 명확한 목적과 비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활동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 투명한 운영: 투명한 자금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신뢰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회계 감사와 공개 보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유지 필요.

○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제 민간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과 노하우를 공유 가능.

○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독립재단이라는 조직 특성은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결사의 자유, 인권, 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등 포괄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수혜자들의 요구를 충족.

□ 약점 요인(Weaknesses)

○ 재정적 불안정성: 정부 출연 불가 시, 지속적인 기부와 후원을 확보하지 못할 시 안정적인 재정 자원 확보 어려움.

○ 정치적 독립성: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 초당적 지지와 기관 자체의 독립성 확보 필요.

○ 문화적 차이: 국내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

원 효과가 제한적이며,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

□ 기회 요인(Opportunities)

○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의 장 마련: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자금과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 재단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큰 영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음.

○ 사회적 인식 제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의 이해와 지지 확보 가능.

○ 새로운 협력 파트너 발굴: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내외 협력을 통해 재정적, 인적 자원을 공유하여, 시너지 창출을 기대.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시민 교육과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이 가능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음.

□ 위협 요인(Threats)

○ 정치적 압력: 특정 정치 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러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국내 정치의 특징으로 미국 NED처럼 초당적 협력이 어려운 국내 정치적 지형을 고려해야 함.

○ 재정적 지속 가능성: 국가 재정난 및 세수확보 감소 우려 속에서 정부 주도 출연 가능성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외부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 시 재정적 불안정성 증가.

○ 사회적 갈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 무산 시 재단의 목적 달성 어려움 존재.

○ 북한 및 3국의 반발: 명시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북한 및 주변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시 부정적 반응 가능성 존재.

4.3.3 (가칭) K-NED 설립 방안

□ 설립 절차

○ 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
- 북한인권재단과 차별화하여 해외 혹은 북한 내 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필요.

○ 행정부 발의 입법 혹은 의원 발의 입법 가능.
- 국내외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의) 명확한 목표하에 초당적인 지지 필요.
- 재단의 주된 재정 자원을 국회의 지원, 행정부 보조금 등 정부 내 수입으로 하되, 민간 기부, 기업 후원 등 다양한 자금원을 고려.

○ 재단 설립 및 운영.
- 재단 운영을 위한 실무 행정조직 구성.
- 초반 운영 및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필요한 재정 자원 확보.

□ 제도적, 행정적 고려사항

○ 조직 관리 및 운영.
- 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 지지를 고루 반영하여 이사회를 구성(이사회는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

○ 국제적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인권 분야의 다양한 국제기구, NGO와 협력하여 재정적,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 국제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제5장 신탁기금 신설을 통한 재원조달

5.1 신탁기금(Trust Fund, TF) 기반 인권증진 활동 현황

5.1.1 UN 인권 신탁기금의 개요

□ UN 인권 신탁기금 특징[36)]

○ UN 인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Voluntary Contributions)은 9개의 UN 신탁기금과 3개의 특별기금으로 유입되고 관리.

○ UN 인권사무소는 UN 다자기금(United Nations Multi-Partner Trust Fund)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

○ UN 인권사무소는 가능한 한 자금의 용도가 비지정(unearmarked)될 것을 권장하나, 특정 기금에 대한 기여금은 용도가 지정되어야만 할당 가능.

<표 5-1 UN 인권사무소가 관리하는 신탁기금>

기금 명칭	설립 연도	설 명
UN 인권 고등판무관 활동 지원 신탁기금 (UN Trust Fund for the Support of the Activitie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3	신탁기금 자체가 정규 예산을 보충하는 기능, 비지정 성격의 약 75%의 추가 예산을 담당
UN 고문 피해자 지원 자발적 기금 (UN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1981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 법률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에 보조금 제공
UN 원주민 지원 자발적 기금 (UN Voluntary Fund for Indigenous Peoples)	1985	원주민이 국제 차원에서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및 국가 법률의 개발과 시행에 참여할 기회 제공
인권 분야 기술협력 UN 자발적 기금 (UN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1987	강력한 법적 체계, 효과적인 국가

36) United Nations, "Trust Funds," at https://www.ohchr.org/en/about-us/funding-and-budget/trust-funds (검색일: 2024.5.30.).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인권 기관, 독립적인 사법부 및 활발한 시민사회 조직 등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적 노력을 지원
현대적 형태의 노예 관련 UN 신탁기금 (UN Trust Fund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1991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와 기타 착취 형태의 인권 침해를 당하는 개인을 지원하는 풀뿌리 프로젝트에 인도적,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
캄보디아 인권 교육 프로그램 UN 신탁기금 (UN Trust Fund for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 in Cambodia)	1992	캄보디아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
보편적 정례 검토 메커니즘 참여 UN 자발적 기금 (UN Voluntary Fund for Participation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2008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공식 대표들이 보편적 정례 검토 과정(UPR)에 참여하고 국가 보고서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편적 정례 검토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UN 자발적 기금 (UN Voluntary Fund for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2008	국가의 요청 및 협의하에 보편적 정례 검토 과정(UPR)에서 나온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
인권이사회 업무 참여를 위한 최빈개도국 및 소규모 도서 개도국 지원 자발적 기술 지원 신탁기금 (Voluntary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013	인권 이사회 세션에 참석하는 대표들에게 교육 과정, 여행 지원 및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빈개도국 및 소규모 도서 개도국의 제도적 및 인권 역량을 강화

<표 5-2 UN 인권사무소가 관리하는 특별기금>

기금 명칭	설립 연도	설 명
비상 기금 (Contingency Fund)	2006	인권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 주로 신속 대응 능력 구축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유지
UN 고문 방지 협약 선택 의정서에 의해 설립된 특별기금 (Special Fund established b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2006	고문 방지 소위원회의 방문 후 발행된 권고 사항 이행 및 국가 예방 메커니즘 교육 프로그램을 재정지원
사회 포럼, 소수자 문제 포럼 및 기업과 인권 포럼에 시민 사회 참여를 위한 특별 기금 (Special Fund for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the Social Forum, the Forum on Minority Issues and the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3	시민사회 대표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의 지역 또는 국가 수준의 비정부기구 참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 UN 신탁기금은 일반 신탁기금(General Trust Fund)과 기술협력 신탁기금(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하 5.1.2와 5.1.3에서 인권 부문의 일반 신탁기금과 기술협력 신탁기금을 각각 검토.

5.1.2 캄보디아 인권 교육 프로그램 UN 신탁기금[37]의 특징과 한계

□ 신탁기금의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캄보디아 유엔 인권사무소는 1993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현지 유엔 인권사무소.

○ 1991년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38]은 캄보디아의 1993년 총선거 이후에도 캄보디아에서 인권 증진 활동을 계속하도록 UN에 권한을 부여.

○ 캄보디아 인권사무소는 A/RES/48/141 등 유엔 결의안에 따라 UN과 캄보디아 정부가 격년으로 체결하는 양해 각서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유지.

○ 캄보디아 인권사무소는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교육, 법률 자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수행 중.

---

37) UN Trust Fund for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 in Cambodia

38) 파리협정은 1991년 10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캄보디아 내전 종식을 위한 종합적인 정치적 해결 협정으로, 공식 명칭은 "캄보디아 분쟁의 포괄적 정치적 해결에 관한 협정"임. 주요 내용은 모든 적대행위 즉각 중단, 캄보디아 내 모든 군사 세력의 무장해제와 해산, 캄보디아에서 평화 유지와 행정 지원을 위해 유엔 과도 행정기구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 설립, 유엔의 감독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거 실시, 인권 보호 및 증진, 헌법 제정 등임.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56/169, United Nations (28 February, 2002)at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72707?v=pdf (검색일: 2024.5.31.).

□ 캄보디아 인권 교육 신탁기금의 프로그램[39)]

○ 기술협력 및 자문 서비스 제공: 교육·기술 지원 및 자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관리, 운영.

○ 인권 보호 및 촉진: 캄보디아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인권 교육 활동.

○ 선거 프로그램 지원: 선거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선거 관련 인권 보호 활동.

○ 법적 지원 및 사법개혁 지원: 법률 지원 부서는 사법개혁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법원과 협력하여 사법 행정상의 불합리성 개선.

□ 인권 신탁기금의 한계

○ 신탁기금의 재원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모두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리라 기대하기 힘들고 따라서 필요한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수 있음.
- 신탁기금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저하.

○ 신탁기금 운영을 위한 인력(외국 직원 8명, 현지 직원 32명 등)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사업 실행이 어려움.
- 예산과 인력 부족은 효율성의 문제를 수반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가 어려워 효과적인 활동 지역 확대, 신규사업 마련 등이 어려움.

39)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SERVICES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Role and achievement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ssisting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Cambodia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HRC/54/72,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6 January, 2004) at https://www.ohchr.org/en/documents/country-reports/ahrc5472-role-and-achievements-office-united-nations-high-commissioner (검색일: 2024.5.31.).

5.1.3 인권 분야 기술협력 UN 자발적 기금[40]의 특징과 한계

□ 기금의 배경과 목적[41]

○ 1987년 유엔 인권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정부, 조직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운영.

○ 주요 목적은 수원국 정부 및 지역 기관에 법적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강화하여 국제 인권기준의 이행 지원.

□ 기금의 운영 및 구조

○ 기금의 운영은 신탁기금 이사회(Board of Trustee)가 감독하며, 이사회 구성원은 유엔 사무총장이 3년 임기로 임명.

○ 이사회는 연간 2회 회의 개최, 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합리화와 개선을 지원하는 임무 담당.

□ 기금의 활동 및 성과

○ 기금은 다양한 국가에서 인권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인권 보호와 증진이 목적.
- 예를 들어, 차드에서는 OHCHR의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전환 과정을 지원하였고, 국가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 기술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

40) UN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41)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Chair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UN General Assembly, A/HRC/49/93, (17 March, 2022)at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g22/285/51/pdf/g2228551.pdf?token=vXgyXOrlEBEv6q0kLJ&fe=true (검색일: 2024.5.31.).

□ 기금의 한계

○ (재정 자원의 한정성) 신탁기금이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 방문과 같은 직접적인 기술 지원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기술협력의 효과성 저하.

5.2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설립을 위한 검토 및 함의

5.2.1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설립을 위한 설립 절차

□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설립을 위해 인권 신탁기금 중 대표적인 유엔 신탁기금과, 보완적으로 ITF와 IDLO의 설립 절차를 검토.

가. 유엔신탁기금 설립 절차[42)]

□ 신탁기금의 종류 선택

○ 일반 신탁기금 (General Trust Fund)
-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성격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지원: 예를 들어 유엔 사무국(Secretariat)의 여러 조직 단위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인도주의적 목적 혹은 긴급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 가능.
- 계속적이거나 장기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연간 단위의 재원을 소비

42) SECRETARY-GENERAL'S BULLETI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rust Funds," United Nations Secretariat (1 March, 1982) at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n82/049/84/pdf/n8204984.pdf?token=6HRSVAzewgHddrsV8E&fe=true ; "Modalities of Trust Fund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in the UN," (August 2015) at https://unece.org/fileadmin/DAM/road_Safety/Modalities_of_trust_fund_establishment_in_the_UN.pdf (검색일: 2024.5.31.).

하는 프로그램을 짜거나 단기적인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

○ 기술협력 신탁기금(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43]: 기술협력 신탁기금(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은 기술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역량 강화 등 경제·사회적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문가 및 준전문가(associate experts)의 지역 또는 지역 간 (interregional) 세미나, 워크숍 및 연수 등 개인/그룹 교육을 후원, 프로젝트에 쓰이는 장비 (project equipment) 제공 등.

□ 신탁기금 설립 예비 활동

○ 프로그램 관리자[44]들은 잠재적 기부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자발적 기금을 유치할 가능성을 모색하되, 논의 과정에서 신탁기금 승인의 약속은 불가.

□ 신탁기금 설립

○ 유엔 총회에서, 특정 목적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신탁기금 설립 결정.

※ 총회에 의해 신탁기금이 설립될 때, 기금의 권한 범위는 총회 결의안이나 결의안에 명시된 문서에 설정: 사무총장에 의한 신탁기금 설립 가능.

○ 총회는 신탁기금에 대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임명.

○ 신탁기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같은 관련 유엔 사무소

---

43) Secretariat, "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 United Nations, ST/AI/285, (1 March, 1982) at https://www.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ST%2FAI%2F285&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검색일: 2024.5.31.).

44) 예를 들어 뉴욕 유엔 본부에 위치한 유엔 여성기금 신탁기금(UN Trust Fund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프로그램 매니저는 유엔 신탁기금의 수장(Chief of the UN Trust Fund)의 지침 아래 여러 전문가 및 지역 정책고문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신탁기금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담당하고, 주요 직책들은 유엔 신탁기금 수장, 보조금 관리자, 프로그램 및 재정 분석가 등이 있음. at https://untf.unwomen.org/en/about-us/un-trust-fund-team (검색일: 2024.5.31.).

또는 기관에서 설립 및 관리.

○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 및 기타 잠재적 기부자에게 신탁기금 설립에 대해 알리고 자발적인 재정 기여를 요청.

○ 사무국(Secretariat)은 유엔 재정 규칙에 따라 신탁기금의 기부 수령, 투자 및 지출 관리 책임.

○ 기부자의 신탁기금에 대한 기부 약속은 약정(pledge)에 의해 서면으로 진행되며, 신탁기금이 공식적으로 설립된 후에 UN의 재무 부문 부사무총장(Assistant Secretary-General for Financial Services)에 의해 수락.

□ 신탁기금 프로그램 이행

○ 신탁기금은 관련 유엔 활동 및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격 당사자에게 재정지원, 기술협력 및 역량 강화를 제공.

○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는 신탁기금의 활동 이행을 감독하고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공.

○ 사무국은 신탁기금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설정해 지원해야 하고, 신탁기금의 수입, 지출 및 이행 활동에 대해 유엔 총회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나. ITF(International Trust Fund) 설립 절차[45)]

45) International Trust Fund, "Report for 1998," (January 1999), at https://www.itf.si/upload/publications/itf_ar_1998.pdf (검색일: 2024.5.31.).

□ 특정 정부의 주도로 설립되어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 국제신탁기금으로 발전한 예로써, ITF 인류 안보 강화[46]는 슬로베니아에 의해 설립된 인도주의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임.

□ 슬로베니아 정부의 신탁기금 초기 설립 사례

○ 1998년 3월 13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지뢰 제거 및 지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신탁기금(International Trust Fund, ITF)을 설립하고 초기 자금으로 130만 달러를 기부.

○ 임시 관리 위원회(Temporary Managing Board) 구성: 슬로베니아 정부는 ITF 설립을 위한 법적 및 공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임시 관리 위원회를 임명.

○ ITF는 슬로베니아 외무부의 지원을 받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지뢰 제거 및 지뢰 피해자 지원 활동과 새로운 기부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외교 활동 전개(60개국, 14개 국제기구 등 접촉).

○ 미국 의회는 1998년 4월 30일 ITF에 2천 8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워싱턴 D.C.에서 슬로베니아 외무부장관과 미 국무장관이 관리협정(Administration Agreement)에 서명.

□ 초기 운영 및 기금 모금 활동: 1998년 하반기, 관리 위원회는 대부분의 활동을 기금 모금과 지뢰 제거 및 지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에 집중.

□ 운영 및 행정 체계 확립: 1998년 9월 1일, ITF의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과 행정조직이 공식 운영을 시작.

46) Republic of Slovenia International Trust Fund for Demining and Mine Victims Assistance (ITF)으로 설립되었으나, ITF Enhancing Human Security로 명칭 변경. International Trust Fund homepage, "ITF in a Nutshell," at https://www.itf.si/about-us/itf-in-a-nutshell (검색일: 2024.5.31.).

□ 제1회 기부자(Donor) 회의 개최: 1998년 11월 8일과 9일, 첫 번째 기부자 회의가 류블랴나(Ljubljana) 근처 이그(Ig)에서 개최되었으며,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21개국 대표, UNDP, UNHCR 등 국제기구 참석.

□ 기금 운영 방식: ITF의 자금은 전적으로 국제 공여에 의해 운영되며, 1998년 이후 최소 430개의 공여자가 ITF에 기금을 기부했으며, 주요 기부자에는 유럽연합, 유엔개발계획, 유엔지뢰행동국, OPEC 국제개발기금 등임.

□ 국제적 거버넌스: ITF는 모든 기금 공여국 및 공여기관 대표들이 참석자 문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는 ITF가 슬로베니아 주도의 기금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체제로 운영됨을 시사.

□ 법적 지위: ITF는 현재 인도주의적,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이며, 이는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짐.

□ 명칭 변경: 2011년에 조직의 명칭을 'ITF Enhancing Human Security'로 변경하였음.

□ 결론적으로, ITF는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는 일반 국제신탁기금과 달리 슬로베니아 정부의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국제적인 신탁기금의 지위를 인정받는 기금으로 발전한 사례임.

다.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47] 설립 사례

□ 비정부기구가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 국제기구로 발전한 예로써, 1983년 설립.

47)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homepage, "HOW IDLO WAS BORN," at https://www.idlo.int/how-idlo-was-born (검색일: 2024.5.31.).

○ 설립 배경: 국제개발법연구소(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Institute, IDLI)는 1983년 비정부기구(NGO)로서, 개도국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에게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 설립자: IDLI는 두 명의 미국 변호사 마이클 헤이거(Michael Hager)와 윌리엄 로리스(William Loris)의 주도로 설립, 프랑스 변호사 질 블랑치(Gilles Blanchi)가 공동 설립자 참여.

○ 초기 지원: 이집트의 법학자이자 당시 OPEC 국제개발기금의 수장이었던 이브라힘 시하타(Ibrahim Shihata)가 법과 개발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지원과 초기 자금을 주선, IDLI 첫 이사회 의장.

□ 국제기구로의 전환(1988년)

○ 전환 배경: 1988년, IDLI의 지위는 비정부기구에서 정부 간 기구로 전환
-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필리핀, 세네갈, 수단, 튀니지, 미국 등 8개국 정부가 국제개발법연구소 설립 협정에 서명하여 성립.

○ 활동: IDLI는 개도국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기술 교육과 전문 주제에 대한 강좌를 제공하여 인지도 확보.

○ 국제적 협력: IDLI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및 아시아의 기관들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유치하고, 이탈리아에 본부를 두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협정을 체결.

□ UN 옵서버 지위 획득(2001년)

○ IDLI는 유엔 총회에서 영구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듬해인 2002년 IDLO로 명칭 변경.

○ 회원국들은 설립 협정을 개정하여 법치주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임무를 포함하고, 기관명을 국제개발법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DLO)로 변경

□ 설립 절차: 크게 세 단계로 ①1983년 비정부기구로 설립, ②1988년 정부 간 기구로 전환, ③2001년 유엔 옵서버 지위 획득 및 2002년 국제기구 IDLO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은 IDLO의 법적 지위와 임무의 확장과 국제적 협력, 법치주의 촉진을 위한 노력을 반영.

5.2.2 북한인권신탁기금(가칭) 설립의 함의(SWOT 분석)

□ 강점 요인(Strengths)

○ 국제적 지원 가능성: 다양한 국제기구와 NGO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가능, 즉 UN과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의 후원, 신뢰성 있는 관리와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 구축 가능.

○ 전문성 보유: 인권 전문가들의 자문과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에 성공적으로 운영된 신탁기금의 경험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 가능.

○ 지속 가능한 구조: 신탁기금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는 체계 존재하며, 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신뢰성 향상 및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영 가능.

○ 한국의 역할이 희석되어 북한 반발 적음: 북한의 인권 개선 압력이 남한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북한의 남한 정부에 대한 반발 적음.

□ 약점 요인(Weaknesses)

○ 복잡한 설립 절차: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 존재, 유엔 총회나 기타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초기 설립을 위한 기부자 확보 및 국제적 협력에 많은 노력 필요.

○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기대하기 어려움: 신탁기금은 한국 정부가 기부자 중 하나로 참여할 뿐 운영과 활동은 총회의 보고 및 감독을 받아 사무국과 신탁기금 이사회가 수행.

○ 재정적 한계: 신탁기금의 재원이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 어려울 수 있으며, 글로벌 팬데믹 상황 등으로 기부금 감소 및 현장 활동의 제약 발생 가능함.

○ 운영 인력 부족: 전문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행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수원국 현지 인력 확보와 교육에 많은 자원이 소요.

□ 기회 요인(Opportunities)

○ 국제적 관심 증대: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 정부 단독행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 가능, 즉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가능하며, 글로벌 인권 운동의 확산으로 후원자 증가가 가능함.

○ 기술협력과 혁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인권 모니터링과 보고서 작성의 간편화가 진행 중이며, 온라인 교육과 자문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에 접근 가능함.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의 효율성 증대 가능.

□ 위협 요인(Threats)

○ 정치적 불안정성: 북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인권 활동 제약 가능

성이 있으며, 국제적 환경과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기금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보안 및 안전 문제: 북한 내 인권 활동가와 지원자들의 안전 위협 문제와, 현지에서의 활동이 제약,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5.2.3 신탁기금 설립 방안

□ 설립 절차

○ UN 신탁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유엔총회의 결의 필요
- 외교부 주도로 가능.
- 단, 북한 인권문제는 중, 러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와 자국의 인권 상황상 반대할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K-NED를 국제신탁기금(ITF) 및 국제기구(IDLO) 형태로 확대
- 국제적 협력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실행

제6장 혁신적 재원마련의 가능성 모색

6.1 국내 북한 인권 기금 재원확보 방안

6.1.1 중앙정부 기금활용 현황 분석

○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왔음. 예를 들어,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하지만 통일부는 타 부처에 비해 관련 부담금 및 기금의 수가 남북협력기금에 그쳐 다양한 목적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통일부 소관의 부담금 및 신규 기금을 도입함으로써, 통일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표 6-1 정부 기금 리스트>[48)]

구분	기금명	근거법률	관리주체
사업성 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획재정부

48) 한국재정정보원, "2024 회계·기금 운용 구조", 2024.

		기본법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국가보훈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대법원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원자력기금	원자력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사회보험성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계정성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금융성 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 중앙정부 기금 중 2024년도에 징수할 귀속 부담금은 총 24조 6,157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됨.

- 2024년도 부처별 부담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18개 부처의 총 91개 부담금이 존재하여 작년('23) 대비 1개 증가하였음.

- 총 91개 부담금을 18개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 20개, 국토교통부 16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가 8개, 농림축산식품부·문화

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가 각 7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이 각 2개,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음.

<표 6-2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49]

(단위: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B/A)
2018	9,456	567,773	9,031	552,121	425	15,652	97.2
2019	9,011	635,393	8,595	619,090	416	16,303	97.4
2020	9,250	773,911	8,841	755,756	409	18,155	97.7
2021	9,039	789,303	8,591	767,611	448	21,692	97.3
2022	9,338	786,072	8,875	763,688	463	22,384	97.2
합계	**86,403**	**5,578,572**	**82,527**	**5,425,042**	**3,876**	**153,530**	**97.2**

49) Ibid

<표 6-3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50]

소 관	부담금명	'24년 징수계획	기 금 명	'24년 기금 귀속액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38,51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127,94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89,42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19,53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9,535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97,223	신용보증기금	1,097,223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115,655	공적자금 상환기금	115,65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2,544,120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2,544,120
	소 계	**5,104,473**	**소 계**	**5,104,473**
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139,952	외국환평형기금	139,9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208,374	원자력기금	208,37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197,350	방송통신발전기금	197,350
	소 계	**405,724**	**소 계**	**405,724**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69,595	국제교류기금	69,595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	41,035	국제질병퇴치기금	41,035
	소 계	**110,630**	**소 계**	**110,630**
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400,591	관광진흥개발기금	634,985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234,394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391	국민체육진흥기금	24,606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4,21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6,242	영화발전기금	26,242
	소 계	**685,833**	**소 계**	**685,83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1,198,210	농지관리기금	1,198,210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92,474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92,474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양곡수입이익금 (콩, 감자 등)	31,743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57,519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납부금	-		

50) 기획재정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3.9.

	농산물수입이익금	25,776		
	대체초지조성비	388	축산발전기금	2,832
	축산물수입이익금	2,444		
	소 계	**1,351,035**	**소 계**	**1,351,03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3,202,77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202,771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2,053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2,053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921.39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21.391
	소 계	**4,126,215**	**소 계**	**4,126,21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926,433	국민건강증진기금	2,926,433
환경부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513,781	한강수계관리기금	513,781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법)	131,920	금강수계관리기금	131,920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267,98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7,980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법)	96,900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96,9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36,255	석면피해구제기금	36,255
	소 계	**1,046,836**	**소 계**	**1,046,836**
고용노동부	사업주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423,043	임금채권보장기금	423,043
	장애인 고용부담금	843,6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843,687
	소 계	**1,266,730**	**직업재활기금 소계**	**1,266,730**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34,79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4,790
	재건축부담금	12,322	주택도시기금	12,322
	소 계	**47,112**	**소 계**	**47,112**
해양수산부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52,201	수산발전기금	60,040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7,605		
	해양환경개선부담금	234		
	소 계	**60,040**	**소 계**	**60,04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출연금	623,522	기술보증기금	623,52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120,103	원자력기금	120,103
합 계		**18,014,638**	**합 계**	**18,014,638**

○ 앞서 제시된 정부부처 부담금 중 외교부 소관의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국제교류기금은 국내에서 징수한 부담금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집행 범위를 한정 짓기보다는 오히려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해당함. 통일부 소관 인권증진을 위한 기금(신설)의 집행범위를 고려할 시 법적 근거, 집행구조 등을 참고해볼 수 있겠음.

○ (국제질병퇴치기금) 동 기금은 2007년부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기금을 관련법 제정을 통해 기금화한 혁신적 개발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임. 부과 및 징수 기관은 외교부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항공권 1매당 1,000원이 부과됨.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 단체를 지원하도록 사용 대상이 정해져 있음.

○ (국제교류기여금) 또 다른 외교부 소관 기금인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기금임.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해당하며, 재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학술·인적·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해옴.

-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여권 발급 수수료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6-4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방식>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법령
모금 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1.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자 가. 유효기간 10년 나. 유효기간 5년	 15,000원 12,000원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2.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자	5,000원	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	
3.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12,000원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 북한 인권 기금/재원 조성에 대한 함의

- 보편적 가치 및 공익적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조세저항이 적은 영역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바,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및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도 같은 맥락에서 모색 가능할 것임.

6.1.2 국내 통일 관련 관람시설 입장료 활용(안)

○ 통일부는 국내외 통일 관련 관람/문화시설 등에서 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기금의 징수에서 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통일부 정책의 중요성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기시킬 수 있음. 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통일 관련 관람시설이 전쟁-평화 위주

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한 부과 대상 및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표 6-5 국내 통일 관련 관람시설 현황>

관람시설	주관 기관	현황	내용	입장료
DMZ 생태평화공원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청	~ 현재	DMZ 생태공원 내 탐방로(십자탑, 용양보)	생태공원 : 3,000원 탐방로 : 10,000원
DMZ 박물관 (강원도 고성군)	정부	2009년 ~ 현재	(야외·실내·온라인) DMZ 전시관 운영/체험 교육	무료
통일안보공원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청	1983년 ~ 현재	통일관·고성통일전망타워·통일 전망대 등 기타 관람시설	3,000원
임진각 관광단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청	~현재	황포돛배·평화곤돌라·생태탐방로 등	평화곤돌라 : 11,000원
DMZ 평화관광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청	~현재	임진각~통일촌 평화열차 관광	도보관람 : 9,200원 모노레일 : 12,200원
한국전쟁기념관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사업회	1994년 ~ 현재	전시관 · 온라인 관람	무료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정부	1992년 ~ 현재	오두산 통일 전망대	무료
판문점견학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2023. 07 운영 중단		

*입장료 : 일반 성인 기준

□ 북한 인권 기금/재원 조성에 대한 함의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통일 관련 관람시설 입장료는 대체로 저렴하거나 무료화되는 추세로, 이러한 입장료 수익 구조로는 충분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통일부의 매칭펀드 방식과, 민간기부 등으로 충당하는 혼합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6.1.3 기업의 ESG 활동 활용

□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현황

○ 2022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로 국경이 개방되고,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한동안 침체되었던 국제적 단위에서의 대규모 오프라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재개되고 있으며, 전쟁 발발과 재난·재해 등 긴급 구호 필요성도 증가해왔음

○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기업 260개 사가 2022년에 지출한 사회공헌 비용 총 규모는 3조 5,367억 1,096만 원, 평균 금액은 153억 1,044만 원으로 파악됨[51)]

-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출 비중(25.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학교·학술'(16.3%), '문화예술·체육'(13.6%), '지역경제 활성화'(13.2%) 순으로 지출하였음[52)]

51) 한국경제인협회, "2023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52) Ibid

<표 6-6 국내 20대 기업 40개 사회공헌재단 목록>

(2017년 기준)

그룹명	재단법인수	사회공헌 재단
삼성	3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자동차	1	현대차정몽구재단
SK	2	한국고등교육재단, 행복나눔재단
LG	2	LG연암문화재단, LG연암학원
롯데	3	롯데문화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포스코	4	청암재단,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포스코교육재단
GS	2	남촌재단, 동행복지재단
한화	1	북일학원
현대중공업	2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KT	1	KT그룹희망나눔재단
두산	2	동대문미래창조재단, 두산연강재단
한진	3	일우재단, 정석물류학술재단, 정석인하학원
CJ	2	CJ나눔재단, CJ문화재단
부영	1	우정학원
LS	1	송강재단
대림	3	대림학원, 대림문화재단,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	2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죽호학원
OCI	2	송암문화재단, 송도학원
영풍	1	경원문화재단
KT&G	2	KT&G복지재단, KT&G사내근로복지기금, KT&G장학재단
합 계	**40**	

○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의 장기적인 대표적인 ESG 활동은 다음과 같음

○ 『Enabling People-삼성전자』[53]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삼성전자의 Enabling People은 청소년 및 청년 계층으로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삼성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매년 수천 명이 참가하는데, 특히 삼성 스마트스쿨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98개 학교에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음

○ 『Life's Good 봉사단-LG전자』[54] :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봉사단 프로그램으로서, 보육원 아동 대상 과학교육, 무상 수리 등 교육 및 환경개선, 복지지원 활동을 수행해왔음. 매년 수천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몽골 등 해외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행복 나눔재단-SK그룹』: 동 활동은 2006년부터 지속되어온 활동으로, 취약 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권보호가 목표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 학습자료 제공, 청소년 자원봉사단 SK SUNNY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H-Jump School- 현대자동차』: 2013년부터 진행된 동 프로그램은 교육 기회 평등 추구하며 대학생 멘토- 저소득층 청소년 연결을 통한 학습지원,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매년 수백 명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함

○ 『상상펀드- KT&G』: 2011년부터 진행된 동 활동은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와 회사의 매칭펀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인권 보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53) 삼성,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3년6월 30일
54) LG 전자, "LG전자 뉴스룸: 나눔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 'Life's Good 봉사단" 2021년12월24일 https://live.lge.co.kr/volunteer-lifesgood/ (검색일: 2024.06.11.).

□ 북한 인권 기금/재원 조성에 대한 함의

• 국내 기업의 ESG 활동 예산을 인권기금 및 재단의 재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6.1.4 기존의 국내 사회적 자본 메커니즘 활용(안)

○ 사랑의열매 등과 통일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통일부의 자체 예산과 사랑의 열매 기금 일부를 북한인권 증진 재원으로 형성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랑의 열매는 모금 수입원을 분야별 및 대상별로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해외/북한/기타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랑의 열매 최근 5개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해외/북한/기타 분야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6-7 사랑의 열매 배분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해외/북한/기타	20,184	18,337	11,800	12,600	10,300
전체 규모	844,383	595,838	726,100	710,400	733,400

출처 : 사랑의 열매 지속가능보고서 2018~2022년

- 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북한/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의 지원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재원 마련을 위한 매칭펀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랑의 열매- 민간기업 사회공헌 협업 사례 분석 및 함의

○ 『카카오메이커스 & 사랑의열매 기부 캠페인』: 카카오메이커스와 사랑의 열매는 2021년부터 한정판 기부 배지를 제작해 수익금을 환원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매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대중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표 6-8 카카오메이커스-사랑의열매 캠페인 현황>[55]

연도	내용	수익규모	지원 방향
2021	-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기부 배지 제작	5000만원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
2022	- '춘식이' 캐릭터를 활용한 두 번째 한정판 기부 배지 제작	약 1억 원	저소득 조손가정에 20kg 쌀 689가마 지원
2023	- '춘식이' 캐릭터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테마 디자인으로 세 번째 한정판 기부 배지 제작	약 1억 3천만 원	자립준비청년에게 노트북 131대 지원

□ 북한 인권 기금/재원 조성에 대한 함의

• 사랑의 열매 모금액 일부를 북한 인권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카카오메이커스와 사랑의 열매의 기부 캠페인은 대중의 큰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북한 인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6.2 해외 재원마련 사례분석

가. 세금 또는 의무적 부담금 형태

55)카카오. "카카오메이커스,사랑의 열매화 함께 만드는 한정판 기부 배지 디자인 투표 진행 2023년 11월 3일,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10673 (검색일:2024.06.03.).

○ 『항공권 연대 기여금(Airline Solidarity Contribution)』: 몬테레이 국제회의 과정에서 나온 개발재원 다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나온 결과물로, 혁신적 개발 재원의 한 종류로 항공권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

<표 6-9 각 국가별 항공권 연대 기금>

국가	내용	기금 사용처
대한민국	-항공편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승객에게 1,000원씩을 부과 -23년 기준 약 400억원의 기여금을 확보하였으며, 누적액 부과액은 4,200억원임	-빈곤퇴치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뒤 2017년부터 국제질병퇴치기여금으로 사용
프랑스	-자국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선에 차등부과 -2024년도를 기준으로 약 2억달러(약 3000억원)의 기여금을 확보하였음	-90%이상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재정지원 할당 -나머지는 IFFIm 할당
영국	-자국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권에 비행거리 및 좌석등급에 따라 차등 과세	-세입을 UNITAID에 직접 공여하지는 않으나 향후 20년간 예산 지원하기로 천명 -일부는 프랑스와 같이 IFFIm에 지원함
노르웨이	국내선 연료사용에 대해서만 항공기 연료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	-UNITAID에 할당
칠레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 -기존 공항세(2달러)에 국제선 항공권(2달러) 추가 부과	-UNITAID에 기여

○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56]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빈곤 퇴치, 공공서비스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등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려는 세금임. 다양한 국가들이 주식, 회사채, 정부채, 선물 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과거 부과했음

- 각 국가에 따라 과세 항목, 세율, 조건 등이 매우 상이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56) 홍범교·이상엽,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2), p. 42

<표 6-10 국가별 금융거래세 부과 현황>[57]

국가	주식	회사채	정부채	선물	비고
아르헨티나	0.6	0.6	0.6	0.6	-2003년 3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0.6% 세율로 과세
호주	0.3	-	-	-	-1990년대 두 번 인하하여, 현재 주식에 대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0.15% 주세 부과
오스트리아	0.15	0.15	-	-	
벨기에	0.17	0.07	0.07	-	
브라질	0	6	6	-	-비거주자의 투자자금에 대해서 부과 -해외발행주식거래에 대해서는 1.5% 부과
중국	0.5/0.8	-	0	-	-2001년 채권에 대해서 부과 -상하이거래소에서 주식거래에 대해 고세율 적용
덴마크	-	-	-	-	-1998년 주식에 대해 부과되던 세율을 0.5%로 인하하였으나, 1999년 폐지
에콰도르	-	-	-	-	-1999년 주식과 채권에 대하여 과세(0.1%)하기 시작했으나 2000년 폐지
핀란드	1.6	-	-	-	-1997년 도입, 헬싱카 증권거래세 전자거래에 대해서만 적용
프랑스	0.2	-	-	-	-2008년 1월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2012년 8월 1일부터 시가총액 10억유로 이상의 기업 주식을 매수할 경우 0.2% 부과
독일	-	-	-	-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그리스	0.6	0.6	-	0.15	-1998년 주식과 채권에 대해 부과하기 시작했음
홍콩	0.1	-	-	-	-채권에 대한 과세는 1999년 폐지 -기타 증서에 대해서는 5달러 부과

○ **『탄소세, Carbon Tax』**: 환경세의 일종으로 오염배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달성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이나 가계의 행위 변화를 유도하고자 도입됨.

- 주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 시기, 과세 항목이 매우 상이

57) 홍범교·이상엽,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2), p. 62

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표 6-11 EU 각국의 탄소세 도입 추이>[58]

국가	명칭	도입시기	비고
핀란드	탄소세	1990년	연료유, 전기, 난방유 과세
노르웨이	탄소세	1991년	1차 에너지 전반 과세
스웨덴	탄소세	1991년	사업연료유, 차량연료유 과세
덴마크	탄소세	1993년	1차 에너지 일부 과세
스위스	탄소세	2009년	난방유, 천연가스 과세
독일	전기세	1999년	연료유, 천연가스 과세
영국	기후변화세	2001년	석탄, LP가스, 천연가스, 전력에 부과

○ **『플라스틱세, Plastic Tax』:**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세금은 목적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하기 위함임. 재활용 가능성, 수입/생산, 포장재 등 플라스틱이 쓰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EU는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수입/생산기업에, 프랑스는 포장재 사용 기업에 부과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비닐봉지 사용 장수에 따라 부과되기도 함

○ **『담배세, Tobacco Tax』:** 각국의 정부들은 담배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EU 국가 내에서도 아래 표와 같이 세율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12 EU 국가들의 담배가격 구조>[59]

국가	가격(파운드)	담배세(파운드)	담배세 비율(%)
아일랜드	7.78	6.17	79
UK	5.67	4.34	77

58) 박현성, "기후변화와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 탄소세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p.78.
59) 강은정, "흡연과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시사점."『보건·복지 Issue&Focus』제5호 (2009년 10월 09일), p. 3,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417?mode=simple

프랑스	5.09	4.09	80
네덜란드	4.55	3.35	74
독일	4.52	3.43	76
스웨덴	4.34	3.12	72
핀란드	4.23	3.25	77
덴마크	4.13	3.03	73
벨기에	4.00	3.09	77
이탈리아	3.46	2.60	75
오스트리아	3.46	2.58	75
알타	3.45	2.63	76
포르투갈	3.27	2.56	78
룩셈부르크	3.08	2.15	70
그리스	2.88	2.12	74
사이프러스	2.71	1.95	72
스페인	2.40	1.86	77
슬로베니아	2.11	1.58	75
체코공화국	2.08	1.65	80
헝가리	2.06	1.52	74
라트비아	2.01	1.65	80
에스토니아	1.98	1.53	77
루마니아	1.55	1.12	72
불가리아	1.42	1.22	86
리투아니아	1.39	0.94	68
폴란드	1.33	1.25	94
슬로바키아공화국	1.30	보고 안됨	보고 안됨

○ **『관광세, Tourism Tax』:**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광정책과 관련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몰디브, 에콰도르 스페인 등 관광산업이 발달된 국가에서 방문/투숙객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의 지출처는 지역사회/환경보존과 관광산업 보조에 사용되고 있음.

<표 6-13 국가별 관광세 요약>[60]

구분	명칭	과세대상	과제주체	과세방식	목적
몰디브 공화국	Green Tax	숙박시설 투숙객	중앙	1인 1박당 6달러	Green Fund 재원
에콰도르	La tarifa de entrada al Parque Nacional Galápagos	국립공원 방문객	중앙	1인당 6~100딜러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및 제도 지역사회와 자연보전을 위한 재원
스페인	Las estancias en establecimientos turísticos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발레아세스 제도)	1인 1객실 1박당 1~4유로	환경 보존
뉴질랜드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뉴질랜드 방문객	중앙	1인당 35달러	환경 보존 및 관광 진흥
멕시코	Visitax Cancun	킨타나루주 출국 여행객	지방 (킨타나루 주정부)	1인당 224페소	관광 진흥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킨타나루 주정부)	1인당 1박 20~25페소	
일본	宿泊稅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도쿄도 정부)	1인당 1박 100~200엔	관광 진흥
			지방 (오사카부	1인당 1박 100~300엔	

60) 김진아·안소진, "해외 관광세 제도 동향,"『TIP』제104권 11호 (2023년 08월), P. 17,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ISSUE&pblcteId=3700

			정부)		
영국	City Visitor Charge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맨체스터 시티)	1객실 1박당 1파운드	관광 진흥
스위스	Kurtaxenreglement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바젤)	1인 1객실 1박당 3.5~4CHF	관광 진흥 및 관광인프라 개선
			지방 (인터라켄)	1인 1객실 1박당 1~4CHF	
				연간 정액 요금 50~420CHF	
			지방 (취리히)	1인 1객실 1박당 2.5CHF	
독일	Übernach-tungsteuer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베를린 주정부)	숙박료 5%	관광 진흥
			지방 (함부르크 주정부)	숙박료 9%	
프랑스	Taxe de séjour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파리시 정부)	0.2~4유로	과잉관광 대응
			지방 (리옹시 정부)	0.2~4유로	
			지방 (니스시 정부)	0.2~4유로	
이탈리아	Tassa di soggiorno	(10일 미만)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로마)	1객실 1박당 3~7유로	과잉관광 대응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베네치아)	1인 1박당 0.7~5유로	
			지방 (밀라노)	1객실 1박당 3~5유로	
		(7일 미만) 숙박시설	지방 (피렌체)	1객실 1박당 4~5.5유로	

		투숙객			
스페인	Sobre las estancias en establecimientos turísticos	관광시설 체류객	지방 (바르셀로나 시의회)	1인 1시설 1박당 2.75 유로	과잉관광 대응
	Las estancias en estalecimientos turísticos		지방 (바르셀로나 정부)	1인 1시설 1박당 1~3.5유로	
미국	Hotel Room Occupancy Tax	(180일 미만) 숙박시설 투숙객	지방 (뉴욕주 뉴욕시)	1박당 0.5~2달러	-
	Transient Occupancy Tax	(30일 미만) 숙박시설	지방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숙박요금 14%	

○ **『횡재세』**[61] **:**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것-기업에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산업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때 정부가 금전적 이득을 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임. EU는 2022년 연대기여금 명목으로 횡재세를 도입하였으며, 에너지/취약 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에 예산이 할당될 예정임.

- 영국은 에너지 이익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이익에 대해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세입은 영국 가정의 생계비 지원으로 활용되어옴. 미국의 횡재세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초과 이익 과세 법안 발의됨.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임

□ **북한 인권 기금/재원 조성에 대한 함의**

61) 이세진·황성필,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03월 28일), P. 1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14 (검색일: 2024.06.19.)

• 통일과 관련된 시설(예: 임진각 평화누리 곤돌라 이용료) 및 북한 접경지역(예: 파주, 의정부, 철원 등)에 방문 또는 입장 시 방문 수수료를 부과함. 해당 수수료를 통해 인권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하지만 입장료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기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경지역 통행료 일부를 인권기금(가칭)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음.

나. 자발적 기여

○ **『Global Digital Solidarity Fund』**[62]**:** 세네갈 대통령인 HE Abdoulaye Wade가 첫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담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검증된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임. 스위스 법률에 따라 제네바에 위치하고 스위스 연방의 감독을 받는 재단임. 국제 거버넌스의 규칙에 따라 조직되어 국가, 도시 및 지역, 국제기구 및 민간 기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혁신자금조달방안: '1% digital solidarity countribution' or 'the Geneva Principle'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지방, 국가 및 민간 부문 당국이 ICT 장비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입찰에 1% 디지털 연대 조항을 도입 또는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자발적인 약속임. 입찰에 승리한 공급업체는 거래의 1%를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자선단체를 통한 모금과 운영은 전통적으로 자발적 기여에 해당하는 재원마련 매커니즘에 해당하나, 2000년대 이후 재원의 규모와 사회개

62) 이하 ITU, "Global Digital Solidary Fund inagurated" https://www.itu.int/itunews/manager/display.asp?lang=en&year=2005&issue=03&ipage=global_digital (검색일:2024.06.01.). 내용 요약

발 혁신성의 측면에 있어 각국 정부의 지출과 대등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10개 민간자선단체는 다음과 같음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미국[63]: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부부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설립하였으며, 주 운영목적은 국제적 보건 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미국 내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임

- Ingka 재단-네덜란드[64]: 다국가 가구점 IKEA의 모회사인 Ingka 그룹의 소유주가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으로, 주 운영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것임

- 웰컴 트러스트-영국[65]: Henry Wellcome 경이 사망한 후 1936년 설립된 재단으로, 주 운영목적은 의학 연구와 의학역사를 이해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임

- 하워드 휴즈 의학 연구소-미국[66] : 미국의 사업가 휴즈 항공사의 하워드 휴즈가 설립한 단체로, 주 운영목적은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학 연구가 목적임

- 포드 재단-미국[67] : 포드자동차 창립자 헨리 포드의 아들인 에드셀 포드 설립하였으며, 주 운영목적은 커뮤니티 사업과 정의구현사업이며, 임팩트 투자와 같은 수단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 민주주의와 인권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카메하메하 학교-미국[68]: 하와이 카메하메하 대왕의 증손녀가 유산 받은 하와이 전 토지의 9%에 해당하는 땅을 기부하며 탄생한 비영리 단체로, 주 운영목적은 하와이 본토 내 주민과 어린이들의 교육임.

---

63) https://www.gatesfoundation.org/ (검색일:2024.06.01.). 내용 요약
64) https://www.ingkafoundation.org/ (검색일:2024.06.01.). 내용 요약
65) https://wellcome.org/who-we-are/history-wellcome (검색일:2024.06.02.). 내용 요약
66) https://www.hhmi.org/ (검색일:2024.06.02.).내용 요약
67) https://www.fordfoundation.org/ (검색일:2024.06.11.). 내용요약
68) https://www.kamehamehafoundation.org/ (검색일:2024.06.12.). 내용요약

- J. 폴 게티 트러스트-미국[69] : 게티 오일 컴퍼니 설립자인 폴 게티가 설립한 단체로, 예술관련 활동을 위히 ㅟ개인 신탁이 시간이 흐르면서 공익 신탁으로 거듭나 약 13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함. 현재 재단, 연구기관, 문화재 복구센터 등 다양한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재단-아랍에미레이트[70]: 아랍에미레이트 부통령 겸 국무총리 셰이크 무하마드 빈라시드 알 막툼이 설립한 재단이며, 아랍권의 빈곤과 질병 퇴치 및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재단 산하 기관은 글로벌 워터 어워드(Global Water Award)를 주관하며 물부족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취약 집단을 위해 담수 공급을 확보하고자함.

- 아짐 프렘지 재단-인도[71]: 인도 IT 기업 위프로의 아짐 프렌지 회장이 설립한 단체로 주 운영목적은 인도의 초등교육으로 매년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

-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미국[72]: 존슨 앤 존슨 창업자 사후에 설립된 단체로, 건강 관리와 보건 증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음.

69) https://www.getty.edu/ (검색일:2024.06.12.). 내용 요약
70)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글로벌 워터 어워드, 5월 말로 신청 마감 연장,"『뉴스와이어』(2024년 5월 09일),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89409 (검색일: 2024.06.19.)
71) https://azimpremjifoundation.org/ (검색일:2024.06.19.).내용 요약
72) https://www.rwjf.org/ (검색일:2024.06.19.).내용 요약

□ 북한 인권 기금/재원 조성에 대한 함의

-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하여 결핵 퇴치 기금 모금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 운동임. 결핵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추진됨.

- 통일부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통해 자발적 기부금을 인권 관련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음.

다. 채권

○ **『녹색 채권』**[73]**:**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일반 채권과 동일한 구조로 발행 및 유통되지만 조달된 자금은 사회적 책임 투자의 일종으로 반드시 친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가짐

- 세계은행(WB)[74]: 2008년 최초로 녹색 채권 발행함. 21년 10월 말 기준 총 발행 규모는 160억 달러임.

<표 6-14 세계은행 녹색채권 자금 분약별 약정 및 배분 현황>
(2008-2021, 5)

분야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약정 금액 합계	약정 비중(%)	배분 총액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6.1	0.1	6.2	36	4.6
청정 운송	4.4	0.2	4.6	27	3.5

73) 김영식·이종섭, "사학연금연구: 사학연금 ESG투자의 현황 및 과제," 사학연금 (2022년 12월 27일), P. 286, https://www.tp.or.kr/tp-kr/bbs/i-160/detail.do?ntt_sn=11 (검색일: 2024.06.19.)

74) 안지연·박복영·배유진·안혜지·하기욱,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06월 30일), p. 79,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10263&act=view (검색일: 2024.06.19.)

수자원과 오폐수	0.3	1.5	1.8	11	0.8
폐기물 관리	0.1	0.0	0.1	<1	0.1
생물다양성	0.1	0.5	0.6	4	0.5
농업, 토지, 산림, 환경자원	0.6	1.9	2.5	15	1.1
기후복원력을 갖춘 인프라 등	0.5	0.8	1.3	8	1.2
총계	12.2	4.9	17.1	100	11.7
비중(%)	71	29	100	-	-

- 영국: 2013년 처음 녹색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1년 10월 말 기준 총 발행 규모는 587억 달러임. 녹색 채권 자금은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함.

<표 6-15 영국 정부의 적격 녹색 프로젝트>

구분	내용
청정 교통	• 휘발유 및 디젤 차량과 기타 운송 수단의 유해 배출물질 저감 • (예시) 무공해 버스를 위한 기금
재생에너지	• 풍력 및 태양열 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화 • (예시) 풍력 및 수소 연구 지원
에너지 효율	• 낭비 에너지 감축을 위한 건물 효율 향상 등 • (예시) 공공건물의 탄소 제거, 재생가능 난방 등
오염 방지 및 제어	• 탄소 포집, 저장, 재활용 프로젝트. 오염물질 저감 • (예시) 탄소 포집 및 저장
생활 및 천연 자원	• 환경과 농촌지역, 자연 보호 관련 프로젝트 • (예시) 산림 조성 및 보전
기후변화 적응	• 지구 온난화 관련 위협 대응 역량 구축 • (예시) 홍수 방어 및 조기 경보 시스템

- 독일: 2013년부터 녹색 채권 발행해온 바 있으며, 21년 10월 말 기준 총 1,574억 달러의 자금 조달됨

<표 6-16 독일 연방정부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사례>

분류	프로젝트명	세부 내용
교통 (국내)	자전거 전용도로 (국가 사이클링 계획)	• 연방정부의 '2030년 국가 사이클링 계획' 수립, 패스트 자전거도로(Radschnellwege) 건설 연간 2,500만 유로 지원
국제협력 (해외)	개도국 친환경에너지 및 중소기업 지원(EnDev)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공동자금 조성하여 EnDev 프로젝트 지원. 독일 국제협력공사(GIZ)가 수행 •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가구의 기후친화적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회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농림업, 생물다양성 (해외)	카리브해 해양오염 (PROMAR)	•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해양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순환경제 솔루션 설계 및 구현 - 해양 유입 폐기물 감시시스템 구축 - 협력 국가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 타 중남미 국가와 사업 결과 공유 실시

- 인도네시아: 2018년에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21년 10월 말 기준 총 39.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운용하고 있음. 더불어 이슬람 채권인 스쿠크(Sukuk)를 최초로 환경 분야에서 발행한 사례에 해당하여, 높은 그린 스쿠크 투자 관심도를 통해 첫 발생 당시부터 계획 대비 높은 투자규모를 유치하였음.[75]

75)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이슈트렌드,"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년 11월 19일), https://csf.kiep.go.kr/issueDetail.es?brdctsNo=30935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42&pageCnt=10 (검색일: 2024.06.19.)

<표 6-17 인도네시아의 녹색채권 및 그린 수쿠크 관리체계>

구분	내용
조달자금 사용	• 적격 녹색 프로젝트는 9개 적격 부문 중 하나에 속해야 함 - 재생가능한 에너지 - 에너지 효율 - 고취약 지역 및 부문 기후변화 복원력/재난 위험 감소 - 지속가능한 교통 - 폐기물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녹색 투어리즘 - 녹색 빌딩 - 지속가능한 농업 등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은 CBT 절차에 따라 실시 • 각 프로젝트의 환경 편익을 국가개발계획청 기후변화 사무국 중심으로 개별 부처와 기관에서 평가, 환경 및 산림부가 NDC와의 일치성 여부 판단, 재무부가 태그 프로젝트 검토 및 선정
자금 관리	• 관련 부처의 지정 계좌에 적립 • 관련 부처는 적격 녹색 프로젝트의 환경 편익을 추정,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보고
보고	• 재무부는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 자금 할당 및 환경적 영향에 관란 연례보고서 작성

- 캐나다 온타리오주: 2014년에 녹색 채권을 최초로 발행했으며, 21년 10월 기준 107억 5,0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채권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표 6-18 캐나라 온타리오주 녹색채권 적격 프로젝트>

구분	세부 내용
청정 교통	•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 및 절약	• 공공부문 건물 효율성 개선 • 승인된 건축 법규를 충족하는 건물
청정 에너지 및 기술	•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 에너지 저장 • 재생가능 투자(생산, 송전, 가전 등)
임업, 농업 및 토지관리	• 지속가능 산림관리 • 자연경관의 보존 및 복원
기후 적응 및 회복력	• 홍수방지 및 빗물 관리 • 극한 기후에 대응 기반시설

- 그 외 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 영국 앵글리안워터사(2017년 첫 발행, 2021년 10월 기준 11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만디리은행,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방은행 등

○ **『IFFLm』:** 국제백신금융기금으로 2006년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금이며 백신채권을 발행함. IFFIm의 백신 채권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회적 책임 투자 중 하나임. 발행한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Gavi, the Vaccine Alliance(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지원함

○ **『사회성과연계채권(SIB)[76]』:**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 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 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임. 정부가 성과를 보상하는 개별 집행방식(1)과 정부가 사업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몇 개의 SIB를 추진 및 자금 조달하는 기금방식(2)으로 구분됨

- 작동 방식: 정부는 SIB 발행기관과 성과달성에 따른 원금과 수익보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 SIB 발행기관은 SIB 대상 사업에 투자할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함. 조성된 투자금은 일종의 사모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데, 이 펀드를 기반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할 서비스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들에게 운영자금을 제공함. 서비스기관은 공공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공사업의 수혜자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에 협의한 성과달성 정도를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음. 평가 결과는 정부와 민간투자자에게 통보되고 민간투자자는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분배받음

- 해외 사례[77]: 영국과 미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존 기금 연계

76)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2012년 07월 01일), P. 9,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php?report_no=255&s_report_type= (검색일: 2024.06.19.)

또는 신규 기금을 조성하여 SIB 정착과 확산을 추진

- 영국의 피터버러 교도소 SIB사업 운영구조: 지급보증자는 사업주관기관인 법무부이며, SIB사업에 소요되는 총500만 파운드는 복권기금인 Big Lottery Fund를 통해 충당함

<표 6-19 정부 기금의 신규 조성 예>

구분	내용		
영국	2011년~2015년	혁신기금 (Innovation Fund)	근로연금부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SIB 운영을 위해 기금 조성
	2012년~2014년	사회성과기금 (Social Outcome Fund)	국무조성실에서 영국 내 SIB 확산을 위해 2,0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앙정부·지자체의 성과보상 재원으로 활용
	2014년~2015년	청년고용기금 (Youth Engagement Fund)	국무조정실, 근로연금부, 법무부 예산으로 조성된 1,6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으로 영국 전역 청소년의 니트족 전락 예방을 목적으로한 SIB에 활용
	2014년~2015년	공정기회기금 (Fair Chance Fund)	국무조정실, 지역사회·지방자체단체부 예산으로 조성된 1,5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으로 노숙 청년들의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SIB에 활용
	2016년~2019년	노숙사SIB기금 (The Rough Steeping SIB Fund)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부 예사능로 조성된 기금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장기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해 SIB에 활용
	2020년~	라이프기회기금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예산으

77) 정은정, 동화영, "해외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현황 및 사례," 『사회적경제 정책리포트』 제2호 (2022년 07월 05일), p. 1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F077&pg=7&board_code=BO04&category_id=CA06&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7923 (검색일: 2024.06.19.)

	현재	(Life Chance Fund)	로 조성된 기금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는 SIB에 활용
미국	2-012년	사회혁신금융신탁기금 (Social Innovation Financing Trust Fund)	메사추세츠 주는 입법을 통해 5,000만 달러까지 SIB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조성
	2015년	성과보상신탁기금 (Success Contract Payments Trust Fund)	텍사스 주는 입법을 통해 5,000만 달러까지 SIB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조성

<표 6-20 기존 정부 기금의 활용 예>

구분		내용	
영국 (중앙)	2010년	복권기금 (Big Lottery Fund)	2010년 세계 최초 SIB, 영국 피터버러시 SIB의 경우 복권기금을 연계하여 성과보상
미국 (중앙)	2014년	사회혁신기금 (Social Innovation Fund)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 마련된 사회혁신기금 중 20%를 SIB 유효성 확인을 위해 사용

- 국내 사례 분석[78]: 서울시 경계선 지능 아동 교육프로그램이 국내의 제1호 SIB 사업에 해당하며, 관련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착수 등의 과정을 거쳐 SIB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 성과보상자는 서울시이며, 실무부서는 사회적경제담당실임. SIB 사업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예산(서울시 일반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매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함

<표 6-21 서울시의 제1호 SIB사업의 주요 추진일정>

일자	추진내역

78) 김순양,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선방안 고찰,"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4호 (2022), pp. 33-69.

2014.3월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2015.4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2015.7월	제1호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2015.10월	제1호 사업 운영기관 보상계약 체결(팬임팩트 코리아)
2016.4월	서울시 제1호 사업 출범식
2016.8월	사업대상 아동군 1차 확보(50명), 사업착수(2016.8.30.~2019.8.29.)
2016.11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전부협의회 창립총회
2017.5월	사업대상 아동군 2차 확보(59명), 지방정부협의회 16개 회원으로 확대
2017.7월	최종 교육아동 101명 확정(퇴소, 거부 등 8명 제외)

○ **『개발성과연계채권』:** 사회연계채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재원마련 매커니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에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사업 종료 후 당초 목표했던 개발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원금과 수익을 보전해주는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작동 방식 또한 사회성과연계채권과 유사하여, 정부 역할이 원조 공여기관으로, 사업 대상지와 사업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빈곤감소로 변환된 형태임

-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에서 시범사업으로 수면병근절연합(Stamp Out Sleeping Sickness Alliance)과 함께 진행한 우간다 수면병 감소를 위한 개발성과 연계채권 사업이 있음.

□ 북한 인권 기금/재원 조성에 대한 함의

▶ 통일부의 SIB를 발행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영국의 법무부 주관 SIB 사업인 피터버러 교도소 사례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 경기도, 부여군,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SIB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기금 신설의 예시로는 우리나라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참고할 수 있음: 해당 기금은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사회적경제연합조직,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의 결과로 설립되었고 소비생협, 금융협동조합, 시중은행 등이 출연자로 참여하고 있음.

- 통일부가 SIB를 발행할 경우 성과보증 예산을 마련해야 함: 보상재원이 궁극적으로 통일부 자체 예산이나, 초기에 통일부의 채권 보증으로 민간재원을 먼저 유인한 후, 성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초기 재원 마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라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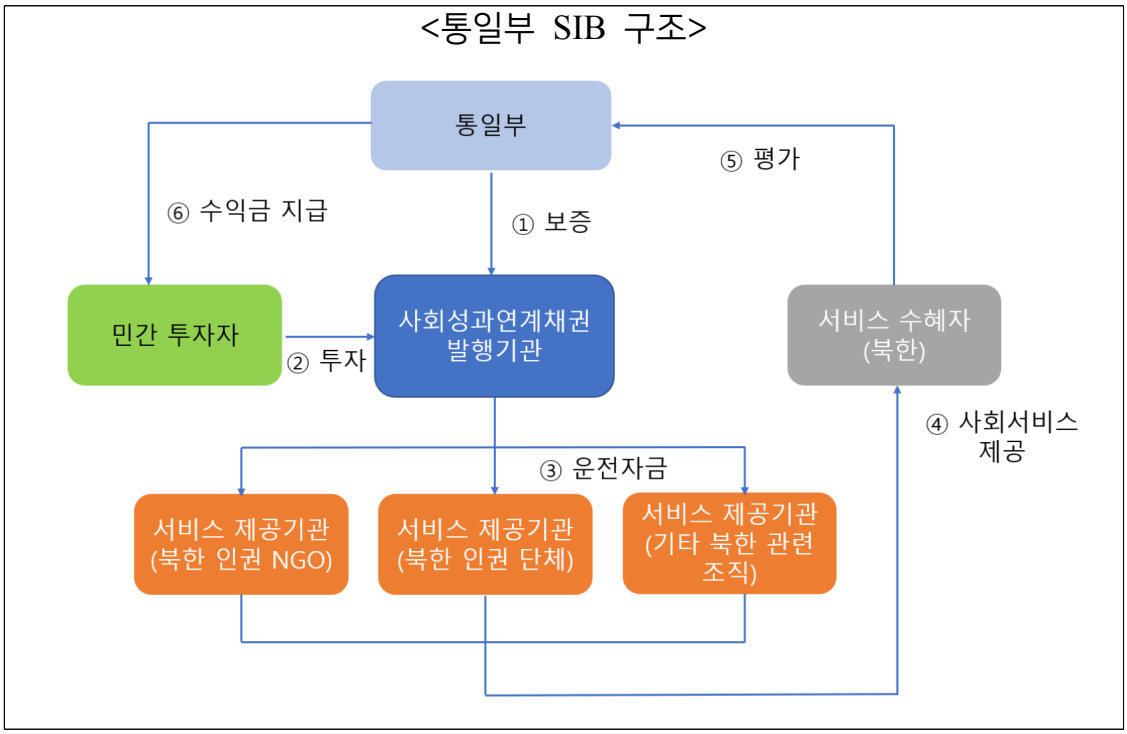
- 통일부에 해당 메커니즘을 적용한 구조는 먼저, 통일부 자체 SIB 사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기관을 공모 과정을 거쳐 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함.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북한인권운동단체 및 기관을 선정하고, 투자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임 (이때 본 자금은 통일부 자체 예산으로 충당).

- SIB 운영기관은 기업, 시중 은행 등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모아진 투자금을 북한 인권 관련 조직들에게 운전자금으로 제공함.

- 북한 인권 관련 조직들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성과를 평가 받음.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들은 통일부(통일부 예산)로부터 원금과 수익을 분배 받게됨(이 경우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성과지표와 그 성과의 과학적 측정 방식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

<통일부 SIB 구조>



라. 기금/펀드

○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79]: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 기구(다자기구)임. 보건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민간협력기금으로 국제 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다자간 보조금 제공자임. 설립 계기는 2001년 유엔 HIV/AIDS 특별총회임.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제안으로 2002년 출범함.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설립에 참여함. 동 기금의 목적은 3대 전염병(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임. 대부분의 재원은 공여국들의 증여로 이루어짐.

- (RED): (RED)는 AIDS,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Global Fund를 위한 자금 모금 기업과의 파트너십 라이센스 브랜드임. 각 파트너 기업이 (RED) 로고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하면 상품판매수익의 일부를 Global Fund에 환원하는 구조로서 아프리카 AIDS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7억 달러를 조성함. (RED)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 및

79) 이하 https://www.theglobalfund.org/en/ (검색일:2024.06.19.).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4년 1월 22일 자료 요약

조직과 협력하여 구매 시 기업이 글로벌 펀드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RED) 브랜드의 제품 및 경험을 개발함.

- **(Debt2Health):** 부채 상환을 보건 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협상된 '부채 교환' 계약에 따라 이행국가는 글로벌 펀드를 통해 세 가지 질병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그 보상기제로서 채권국은 이행국이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할 수 있음.

○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80]:**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 및 펀딩 플랫폼으로 개도국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된 조직임. 전술된 Debt2Health와 유사한 'Debt2Edu' 등의 매커니즘을 통해 부채 상환을 교육 투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GPE Multiplier:** 개발도상국이 추가 자금을 모금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매칭펀드 메커니즘임. 국가가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기부자나 기타 자금 출처에서 자금을 확보하면, GPE가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GPE Match:**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임. 기업이나 재단이 교육 프로젝트에 기부하면, GPE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북한 인권 기금/재원 조성에 대한 함의**

▶ 한국이 주도하여 글로벌 펀드와 유사한 인권 관련 국제 민간협력기금

80) https://www.globalpartnership.org/ (검색일:2024.06.19.).내용 요약
81) 정지원·박수경·임소영,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년 12월 30일), p. 17,

을 조성할 수 있음.

- 이러한 종류의 펀드는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탁기금과 달리, 한 국가 및 정치적 저명인사의 발의에 의해 설립가능한 이점이 있음.

-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함.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무력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됨.

-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해 Global Fund는 본래의 목적에서 파생하여 세계사회보장기금(Global Fund for Social Protection)을 추가하였음.

-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인권보장기금(가칭)등을 창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국제기금의 설립과정은 GCF[81]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시) 우리나라의 대북 차관 현황은 약 9억3290만 달러[82]이며 해당 차관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제공됨. 하지만 북한은 만기 이후에도 상환 요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대응중임. 따라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시 북한이 인권을 위한 프로그램에의 투자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부채를 탕감해주는 '부채 교환' 계약을 시행할 수 있음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612&cg_code=C01 (검색일: 2024.06.19.)

82) 박준상, "우리가 받을 돈 1조3600억원...상환 요구에도 北 '버티기'," 『국민일보』 (2024년 06월 06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7577973 (검색일: 2024.06.19.)

7. 결론

□ 본 정책연구에서는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재원의 마련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수행함.

□ 결론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증진이라는 기본 정신 및 목표로 인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시민적권리 관련 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써 아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기금법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재원의 마련임.

○ 첫째, 북한인권법의 제11조(재단의 운영)에 재원 마련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별도의 북한인권기금법을 제정하는 방안임: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기금 설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 법안의 기본취지 구현을 위한 해석으로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였음. 이에 비해 북한인권법에서는 재원의 마련을 구체적으로 이미 명시한바, 이를 근거로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현행 북한인권법 제4조에 북한인권기금법을 명시하여야 함.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안)은 59~61 페이지 참조.

○ 둘째,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내정치 상황 및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북한인권법의 제11조를 구체화 개정하여 인권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임. 이 경우 제정보다는 개정이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팀이 제안한 '북한인권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전면개정과, 현행 제11조의 '1조. 정부의 출연금'을 '북한인권기금의 마련'

문구만 포함하는 최소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금의 마련, 집행 등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미국의 NED를 벤치마킹한 K-NED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북한의 인권증진만을 위한 K-NED 설립 추진 시 국회 통과의 현실성이 부족한바,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또한 슬로베니아 정부가 추진한 ITF Enhancing Human Security 신탁기금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함: 유엔총회의 승인을 필요로하는 일반 신탁기금과 달리, 특정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대표적인 신탁기금이 ITF의 경우, 유엔총회의 승인을 필요로하지 않고 특정국가의 주도적 리더십에 기반하여 설립된 펀드라는 점에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신탁펀드를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임.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는바, 여기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기금마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 신탁기금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금설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립에 있어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이 결의안의 기금설치 권고 내용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슬로베니아의 ITF 신탁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하겠음.

□ 끝으로, 국제기구와 달리 글로벌펀드(Global Fund)와 같은 국제 비영리기구는 (북한)인권 증진 사업과 같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이해의 폭이 넓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글로벌펀드와 같은 국제 비영리기구에 (북한)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신설한 후 사업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통일부는 현재 타 부처와 달리 어떠한 국제기구 및 국제 비영리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과 달리 국제기구 및 국제비영리기구(ex, 글로벌펀드)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은 소관 부처의 재량권과 절차적 간편성이 존재하는바, 글로벌펀드와 같은 기구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우리 정부 주도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납부하는 운영하는 방안임.

○ 국제기구에 대한 사업분담금의 경우 소관 부처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처가 해당 국제기구와 사업분담금 납부 및 참여에 대한 협약 및 MOU 등을 체결하고, 이를 외교부 승인을 거쳐 기재부 예산 통과 시 납부 가능함.

○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 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 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국제기구에 대한 사업분담금 편성이 가능함.

사업분담금 납부 부처	근거법령 및 사업 집행절차
외교부의 글로벌펀드 사업분담금 집행근거 및 절차[83]	근거법령: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집행절차:

83) 외교부, "2024년 외교부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2024년 1월 30일
84)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4년 1월 22일

<table>
<tr><td></td><td>


</td></tr>
<tr><td rowspan="2">보건복지부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집행 근거 및 절차[84]</td><td>근거법령:「보건의료기본법」제50조(국제협력 등) 국가 등 지방 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 및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td></tr>
<tr><td>사업 집행절차: 당해연도 예산통보(보건복지부) => 사업제안서 제출(WHO) => 검토 및 지원 합의서 서명(보건복지부, WHO), -> 분담금 집행(보건복지부) => 결과보고(WHO) -> 점검(보건복지부)</td></tr>
</table>

참고문헌

"22 USC CHAPTER 54, SUBCHAPTER II: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t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22/chapter54/subchapter2&edition=prelim (검색일: 2024.5.30.).

"About UN Human rights," United Nations, at https://www.ohchr.org/en/about-us (검색일: 2024.5.30.).

"DEMOCRACY PROMOTION PROGRAMS FUNDED BY THE US GOVERNMENT: A REPORT TO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ND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US CONGRESS," pp. 39-42, at https://pdf.usaid.gov/pdf_docs/Pcaaa756.pdf (검색일: 2024.5.30.).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Resource Summary," (2012), at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1143.pdf (검색일: 2024.5.30.).

Azim Premji Foundation https://azimpremjifoundation.org/ (검색일:2024.06.19.).내용 요약

Christineb. "LEARN ABOUT OUR REAGAN-FASCELL DEMOCRACY FELLOWSHIP PROGRAM," (August 9, 2018), at https://www.ned.org/learn-about-our-reagan-fascell-democracy-fellowship-program/ (검색일: 2024.5.30.).

---. "NORTH KOREA 2021," (14 February, 2022), NED at https://www.ned.org/region/asia/north-korea-2021/ (검색일: 2024.5.30.).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Services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Role And Achievement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ssisting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Cambodia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HRC/54/72,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6 January, 2004) at https://www.ohchr.org/en/documents/country-reports/ahrc5472-role-and-achievements-office-united-nations-high-commissioner (검색일: 2024.5.31.).

Ford Foundation https://www.fordfoundation.org/ (검색일:2024.06.11.). 내용요약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country/north-korea/freedom-world/2024
Gates Foundation. https://www.gatesfoundation.org/ (검색일:2024.06.01.). 내용 요약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56/169, United Nations (28 February, 2002) at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72707?v=pdf (검색일: 2024.5.31.).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https://www.globalpartnership.org/ (검색일:2024.06.19.).내용 요약
Hale, Eric T.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Ph. D. Dissertation, 2003 at https://repository.lsu.edu/cgi/viewcontent.cgi?article=3773&context=gradschool_dissertations,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https://www.hhmi.org/ (검색일:2024.06.02.).내용 요약
HRNK.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in Japan" https://www.hrnk.org/uploads/pdfs/Japan_NKHRA_2005.pdf(검색일: 2024.6. 11.).
---. https://www.hrnk.org/(검색일: 2024.6.11) 내용과 인터뷰(2024. 6. 11)를 참조하여 정리함.
Ingka Foundation. https://www.ingkafoundation.org/ (검색일:2024.06.01.). 내용 요약
International Trust Fund. "Report for 1998," (January 1999), at https://www.itf.si/upload/publications/itf_ar_1998.pdf (검색일: 2024.5.31.).
ITU. "Global Digital Solidary Fund inagurated" https://www.itu.int/itunews/manager/display.asp?lang=en&year=2005&issue=03&ipage=global_digital (검색일:2024.06.01.).
Kamehameha Foundation https://www.kamehamehafoundation.org/ (검색일:2024.06.12.). 내용요약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Financial Report 2022," at https://www.ned.org/2022-annual-report/ (검색일: 2024.5.30.).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4.05.30.).
Public Law 108 - 333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https://www.govinfo.gov/app/details/PLAW-108publ333/related(검색일:

2024.6.11.).
Republic of Slovenia International Trust Fund for Demining and Mine Victims Assistance (ITF)으로 설립되었으나, ITF Enhancing Human Security로 명칭 변경. International Trust Fund homepage, "ITF in a Nutshell," at https://www.itf.si/about-us/itf-in-a-nutshell (검색일: 2024.5.31.).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https://www.rwjf.org/ (검색일:2024.06.19.).내용 요약
The Getty Foundation https://www.getty.edu/ (검색일:2024.06.12.). 내용 요약
The Global Fund. https://www.theglobalfund.org/en/ (검색일:2024.06.19.)
The World Bank.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RUST FUND PROGRESS REPORT," (April 2020), at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876381612262242877/pdf/April-2019-2020.pdf (검색일: 2024.5.30.).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Chair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UN General Assembly (17 March, 2022) at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g22/285/51/pdf/g2228551.pdf?token=vXgyXOrlEBEv6q0kLJ&fe=true (검색일: 2024.5.31.).
United Nations. "Trust Funds," at https://www.ohchr.org/en/about-us/funding-and-budget/trust-funds (검색일: 2024.5.30.).
UNPRPD. "DPRK - Leveraging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to Strengthen Policy and Systems Capacity to Advance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 https://mptf.undp.org/project/00112316 (검색일: 2024.5.30.).
Wellcome Trust. https://wellcome.org/who-we-are/history-wellcome (검색일:2024.06.02.). 내용 요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2931&efYd=20240608#0000(검색일: 2024.6.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17.법률 제20000호, 2024. 1.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65&efYd=20240417#0000(검색일: 2024.6.10.).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671&efYd=20180605#0000(검색일: 2024.5.18.).
「남북협력기금법」(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1호, 2024. 1.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67&efYd=20240417#0000(검색일: 2024.5.18.).
「북한인권법 시행규칙」(시행 2016. 9. 4. 통일부령 제88호, 2016. 9. 2., 제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86159&efYd=20160904&ancYnChk=0#0000(검색일: 2024.5.29.).
「북한인권법 시행령」(시행 2016. 9. 4. 대통령령 제27476호, 2016. 9. 2., 제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86157&efYd=20160904&ancYnChk=0#0000(검색일: 2024.5.29.).
강우창. "세계 민주주의 증진과 한국 국회의 역할," 동아시아연구원 (2023년 10월 30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board=kor_special&intSeq=22185 (검색일: 2024.5.30.).
강은정. (2009). "흡연과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시사점"『보건복지 Issue & Focus』, 제5호. https://doi.org/10.23064/2009.10.5.(검색일: 2024.6.12.).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년6월3일
https://www.moe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menuNo=502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919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검색일:2024.06.10.).
---.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3년9월1일
https://www.moe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menuNo=502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562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 (검색일:2024.06.01.).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2012년 07월 01일).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php?report_no=255&s_report_type= (검색일: 2024.06.19.)
김순양.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선방안

고찰"『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4호 (2022)
김영식, 이종섭. "사학연금연구: 사학연금 ESG투자의 현황 및 과제," 사학연금 (2022년 12월 27일). https://www.tp.or.kr/tp-kr/bbs/i-160/detail.do?ntt_sn=11 (검색일: 2024.06.19.)
김진아, 안세진. "해외 관광세 제도 동향."『TIP Issue Paper』제104권11호 (2023년 8월). https://kiss.kstudy.com/ExternalLink/Ar?key=4042697 (검색일: 2024.06.05.).
박준상. "우리가 받을 돈 1조3600억원...상환 요구에도 北 '버티기'."『국민일보』 (2024년 06월 06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7577973 (검색일: 2024.06.19.)
박현성. "기후변화와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 탄소세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인권법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1%ED%95%9C%EC%9D%B8%EA%B6%8C%EB%B2%95(검색일: 2024.5.29.).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4년 1월 22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37&act=view&list_no=1479975&tag=&cg_code=&list_depth=1 (검색일: 2024.06.11.).
북한민주화 청년학생 포럼. http://yfnkd.or.kr/ko/(검색일: 2024.5.28.). 내용을 요약 정리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보고서, 2020년 7월 22일 https://chest.or.kr/bbs/1015/initPostDetail.do .(검색일:2024.06.01.).
---. 2020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보고서, 2021년 6월 29일 https://chest.or.kr/bbs/1015/initPostList.do (검색일:2024.06.01.).
---. 2021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보고서, 2022년 6월 14일 https://chest.or.kr/bbs/1015/initPostList.do (검색일:2024.06.01.).
---. 2022사랑의열매 지속가능보고서, 2023년6월 28일 https://chest.or.kr/bbs/1015/initPostList.do .(검색일:2024.06.01.).
삼성.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3년6월 30일 https://www.samsung.com/sec/sustainability/media/pdf/Samsung_Electronics_Sustainability_Report_2023_KOR.pdf (검색일:2024.06.01.).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 "인도네시아, 환경 자원 보존 노력 확대." (2020년 11월 19일). https://csf.kiep.go.kr/issueDetail.es?brdctsNo=309355&mid=a10200000000&search

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42&pageCnt=10 (검색일: 2024.06.19.)
안지연 외.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KIEP 연구보고서』DOI: https://ssrn.com/abstract=4202921 (검색일: 2024.6.10.).
오수현.“혁신적 개발재원 조성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 개념의 발전과 동향”.『국제개발협력』제3호 31-51. (2016).
외교부. “2024년 외교부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2024년 1월 30일 https://www.mofa.go.kr/www/brd/m_20637/view.do?seq=365346&page=1 (검색일: 2024.06.11.).
윤나미. “항공권연대기여금의 해외 사례”.『국제개발협력』, 제2권 3호 (2007).
이상윤.『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3)
이상준. “. DIB의 개발협력사업 적용과 시사점”『국제개발협력』제9권 3호 (2014)
이슬아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글로벌 워터 어워드, 5월 말로 신청 마감 연장,”『뉴스와이어』(2024년 5월 09일),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89409 (검색일: 2024.06.19.)
이세진, 황성필.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03월 28일).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14 (검색일: 2024.06.19.)
이준일 외. “행정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2015년 4월 7일), p.4. 2015
전수미.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법학연구』 17권 4호 (2017)
정은정, 동화영. “해외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현황 및 사례”『사회적경제 정책리포트』제2호.(2022년 7월 5일).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5&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6&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7923(검색일: 2024.06.11.)
정지원외.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년 12월 30일).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612&cg_code=C01 (검색일: 2024.06.19.)
통일부.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2018년 12월 15일. 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id=113(검색일:

2024.6.5.).
---. “남북협력기금 통계(’24. 4월말)”, 2024년 5월 13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interkoreanfund/bfPresent/?boardId=bbs_0000000000000061&mode=view&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cntId=54378&category=&pageIdx (검색일: 2024.6.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Online Series』제 8호 pp. 1-5. (2016).
한국경제인협회. “2023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2024년 1월 8일 https://www.fki.or.kr/main/publication/report_detail.do (검색일:2024.06.01.).
한국사총설DB. “Ⅰ. 미국의 해외선전과 미국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 USIA),” 해외사료총서,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fs_013_0050_0010 (검색일: 2024.5.30.).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지원현황.” 연도별 기금 현황. https://www.koreaexim.go.kr/se/HPHFSE052M01.(검색일: 2024.6.4.).
한국재정정보원. 2024 회계·기금 운용 구조, 2024년4월5일 https://fis.kr/ko/notification/data/financial_stat?articleSeq=3891 (검색일:2024.06.01.).
허준영·김지혜.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제26권 1호 pp. 25-56. (2017).
홍범교, 이상엽.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년 11월).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300032077(검색일: 2024.06.11.).